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김동훈·김은영

연구보고 2020-06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저 자 김동훈, 김은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06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04535)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56-2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의 장기화와 산발적 확산세 속에서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학교급·학년별 순차 등교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등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유치원 수업일수의 감축으로 인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이나 유아의 성장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적정 유치원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유아의 성장발달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수업일수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절차나 유치원 원격수업 근거 법령 마련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조정은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유치원 원격수업에 근거는 법 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립과 사립유치원간 수업일수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연구범위	14
II. 이론적 배경	17
1.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19
2.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및 운영 관련 교육부 대응조치	31
3. 유치원 운영 및 교사 교육시간 현황	38
4. 선행연구	46
5. 소결	51
III.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분석	55
1.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	57
2.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국제비교	69
3. 소결	79
IV.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전문가 인식	83
1. 유치원 수업일수	86
2. 유치원 수업시간	88
3. 소결	92

V. 정책 제언 **95**

- 1.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97
- 2. 유치원 수업일수 최대일수에 대한 논의 99
- 3.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근거 마련 필요 100

참고문헌 **103**

부록 **109**

- 부록 1. 전문가 조사 질문지(1차) 109
 - 부록 2. 전문가 조사 질문지(2차) 113
 - 부록 3. 부록 표 119
-



표 목차

〈표 II-1-1〉 유치원 교육시간 의미	19
〈표 II-1-2〉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조문 주요 개정이력	21
〈표 II-1-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수업일수 관련 법조문 주요 개정이력	22
〈표 II-1-4〉 유치원 교육시간의 관점별 개념	25
〈표 II-1-5〉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 및 편성·운영	26
〈표 II-1-6〉 유치원 수업일수 및 1일 교육시간 관련 변천사	27
〈표 II-1-7〉 시·도교육청 유치원 수업일수 현황	30
〈표 II-2-1〉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치원 개학연기 및 휴업일	33
〈표 II-2-2〉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유치원 운영관련 정책 변화	34
〈표 II-2-3〉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 대응지침	37
〈표 II-3-1〉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	38
〈표 II-3-2〉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오전)	39
〈표 II-3-3〉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오후)	41
〈표 II-3-4〉 유치원 평균 연간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42
〈표 II-3-5〉 사립유치원 교사 출·퇴근 시각과 일일 총 근무시간	44
〈표 II-3-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과 중 업무내용	45
〈표 III-1-1〉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대상	58
〈표 III-1-2〉 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 (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	60
〈표 III-1-3〉 시·도교육청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 (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	61
〈표 III-1-4〉 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63
〈표 III-1-5〉 시·도교육청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 (코로나19 이후, 2020년)	63
〈표 III-1-6〉 설립유형별·수업일수 구간별 유치원 수 (코로나19 이후, 2020년)	64
〈표 III-1-7〉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65
〈표 III-1-8〉 설립유형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9년)	66
〈표 III-1-9〉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9년)	66

〈표 Ⅲ-1-10〉 설립유형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68
〈표 Ⅲ-1-11〉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68
〈표 Ⅲ-2-1〉 국가별·연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수업시간	70
〈표 Ⅲ-2-2〉 국가별·연간 교사 학교근무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72
〈표 Ⅲ-2-3〉 국가별·학교급별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2019년)	76
〈표 Ⅲ-2-4〉 연도별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수업주수, 교사1인당 수업시간 국제비교	78
〈표 Ⅳ-1-1〉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86
〈표 Ⅳ-1-2〉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불필요한 이유(중복응답)	87
〈표 Ⅳ-2-1〉 일과 중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88
〈표 Ⅳ-2-2〉 교사 업무시간 중 수업(교육) 및 수업(교육) 준비시간 비중	90
〈표 Ⅳ-2-3〉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	91
〈표 Ⅳ-2-4〉 대체교사 수당 한도와 금액	91
〈표 Ⅴ-1-1〉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98
〈표 Ⅴ-1-2〉 유아교육법 개정(안)	99



그림 목차

[그림 Ⅲ-1-1]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 비교(코로나19 이전, 2019년)	67
[그림 Ⅲ-1-2]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 비교(코로나19 이후, 2020년)	69
[그림 Ⅲ-2-1] 유치원 교사 연간 근로시간 중 수업시간 비율 국제비교	75
[그림 Ⅲ-2-2] 국가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 (2019년 기준)	77
[그림 Ⅳ-1]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에 대한 주요 결과	85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Ⅲ-1-1〉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업일수	119
〈부록 표 Ⅲ-1-2〉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수업일수	120
〈부록 표 Ⅲ-2-1〉 국가별 교사 연간 근로시간 중 수업시간 비율	122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유치원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특히 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해 논의함.

나. 연구내용

-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지침을 고찰함.
 -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및 변화추이와 초·중등학교 관련 법·지침과의 차이점을 분석함.
- 유치원 수업일수 등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봄.
 - 코로나19 이후 교육부 대응조치 및 유치원 수업(교육)시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 우리나라 유치원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분석함.
 - 우리나라 및 OECD 국가 등 해외 주요국의 유치원 수업일수 및 교육시간을 비교·분석함
-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및 수업시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과 지침을 조사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OECD 발표 자료 등을 살펴봄.
- 유치원알리미 데이터 분석

- 정보공시 자료에 기반을 두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업일수 등을 비교함.
-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유아교육 전문가 30인(교수 12인, 현장교원 12인, 시·도교육청 장학관 6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교육)일수 및 수업(교육)시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 이론적 배경

가.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에 의하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학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간수업일수가 220일에서 190일 이상으로 감축되어 시행되고 있음.
- ☐ 유치원은 별도의 수업시수는 없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5)부터 유치원 1일 교육시간은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 시·도교육청 모두 연간수업일수는 법정 최소기준인 180일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과정 1일 운영시간은 세종, 전남교육청(1일 4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일 4~5시간으로 되어 있음.

나.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및 운영 관련 교육부 대응조치

-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교육부는 총 5차에 걸친 개학연기를 통해 총 59일의 휴업일을 가졌으며, 5월 27일부터 유치원 개학이 실시되었음.
- ☐ 특히,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근거(2020. 6. 17. 개정),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2020. 8. 14. 개정)를 마련하였음.

다. 유치원 운영 및 교사 교육시간 현황

- 2017년 기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시간 41분이며, 공립은 4시간 35분, 사립은 4시간 48분으로 차이가 있었음.
-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206.1일이지만, 공립은 191.8일, 사립은 221.9일로 그 편차가 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8시간에서 2시간이나 초과됨.

라. 선행연구

- 유치원 수업시간에 급간식, 휴식, 전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와 1일 교육시간과 유아의 발달 사이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3.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분석

- 유치원 및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기초하여 유치원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분석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는 교육부 정책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인 2019년 유치원의 3세 수업일수는 209.5일, 4세는 207.5일, 5세는 205.8일, 특수학급 184.0일, 방과후과정은 229.6일로 나타남. 또한 국공립 유치원은 연령별로 184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220일 정도로 거의 연중 운영되고 있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일수록 수업일수를 많이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인 2020년 유치원의 3세 수업일수는 179.5일, 4세는 178.0일, 5세는 176.7일, 특수학급 161.4일, 방과후과정은 201.6일로 나타남. 국공립 유치원 수업일수는 160~161일 정도로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189일 정도임.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인 2019년 유치원 수업일수에 비해 29.2일이 감소하였고, 유치원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180일 이상을 충족한 유치원은 33.2%, 180일 미만인 유치원은 66.8%였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인 2020년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하였음.

- 2019년 초등학교 전체의 연간 수업일수 평균은 191.2일로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최소 기준일인 190일에 근접하였고, 유치원과는 연간수업일수가 15일 정도 차이남. 교원1인당 주당평균 수업시간은 21.9시간임.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이후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 190일보다 17일정도 더 적었고,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일(19일) 범위 내에서 연간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일수, 수업시간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OECD 국가 유치원 교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40주, 194일 동안 연간 993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연간 36주, 180일 이상 연간 762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의 교사당 1일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은 5.1시간, 우리나라는 4.3시간(공립유치원)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법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 평균은 993시간, 초등학교 교사는 778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이 28% 정도 더 많음.

- 유치원 교사 총 근로시간 중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비율은 OECD 평균은 63.6%, EU 평균은 68.2%이며, 우리나라(공립유치원 교사)는 54.3%로 평균 보다는 낮았음.

4.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전문가 조사

가. 유치원 수업일수

□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30.0%, ‘불필요하다’는 70.0%로 나타남.

- 조정 필요 이유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감축할 수 있어야

한다'와 '사립유치원의 경우 220일까지 과도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제시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음.

- 조정 불필요 이유로는, '최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음.

나. 유치원 수업시간

□ 유치원 수업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바깥놀이를 포함한 자유놀이 시간과 대소집단 활동은 응답자 모두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시간들은 이견이 있었음.

-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하원지도 56.7%, 기본생활 76.7%, 점심시간 96.7%, 간식시간 93.3%, 낮잠 및 휴식시간 60.0%, 전이시간 80.0%로 나타남.

□ 교사의 업무 시간 중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을 100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0: 40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대체수업에 대한 수당지급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대체교사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인 4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1시간을 기준으로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1일 한도액은 7만5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27.6%로 가장 많았음.

5. 정책제언

가.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개정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나, 다양한 여건이나 환경 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등 결정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요약표 1〉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유치원 원격수업 근거 법령 마련

- 유아교육법상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 이후 이에 상응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요약표 2〉 유아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나. 유치원 수업일수 최대일수에 대한 논의

-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조정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업일수 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수업일수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사립 유치원간 연간 수업일수에서의 큰 차이는 유치원 수업일수에 대한 상한선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다.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근거 마련 필요

- 40분에 1만원인 초등학교 보결수당과 비교한다면 60분에 1만 5천원으로 산출하여 4시간 60,000원이나 5시간 7만 5천원으로 하여 1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도는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유아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학교급·학년별 순차적 등교수업 실시라는 새로운 방식의 학사운영 형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2020년 1학기 시작이 5차에 걸친 휴업명령과 초·중·고등학교의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가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였고, 결국 유치원의 등원시작은 5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4.; 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11.).

그간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개학 연기로 교육부는 유치원의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인 18일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2. 23.;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

그러나 유치원 수업일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휴업명령으로 감축 가능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였고,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온라인 원격수업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 여름·겨울 방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등원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치원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요구하였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 또한 유치원 수업일수의 추가 감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¹⁾

1)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713&cID=10201&pID=10200, 2020년 10월 6일 인출). 비온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0529093458932546a9e4dd7f_30, 2020년 10월 6일 인출). 한국유아교육신문(<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3>, 2020년 10월 6일 인출).

교육부는 수업일수 추가 감축 요구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교육부 보도 자료, 2020. 7. 9.), 8월 14일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으로는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유아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41호, 2020. 8. 14., 일부개정].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은 학교로서의 정체성이나 유아의 성장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대부분이 해당하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같이 이루어지는 통학버스나 급식운영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있고,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일수나 방학일수 감축은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학이 거의 없는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는 경우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유치원 수료 및 졸업요건에 수업일수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의 수업일수가 유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유치원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유아의 성장발달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수업일수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지침을 고찰하였다. 우선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 후, 이를 초·중등학교와 비교하여 주요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유치원 수업일수 등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수업일 등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응조치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유치원 운영시간 및 교사 교육시간 현황,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유치원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분석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수업일수 및 교사1인당 수업시간을 OECD 국가 등 해외 주요국 유치원의 수업일수 및 교사1인당 수업시간 등과 비교하였다.

넷째,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및 수업시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의 필요 여부와 이유, 수업시간 포함 내용,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 대체교사 수당 지급 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나 수업시간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조사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지침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수업일수 관련 지침이나 유치원 운영 현황자료, 국내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였다. 이외에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OECD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 유치원알리미 데이터 분석

유치원알리미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시 자료에 기초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유치원알리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공시자료와 이후인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초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전인 2019년 공시자료와 코로나19 이

후인 2020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변동사항을 파악하였다.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유아교육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교육)일수 및 수업(교육)시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교육자 12인(전문대학 포함), 유치원현장교원 12인(원장 6인, 교사 6인, 공사립 동수), 시·도교육청 장학관 6인으로 총 30인이었다. 델파이조사는 2차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객관식 문항의 조사결과를 제시해 주고, 1차에서 주관식으로 받은 응답을 분석하여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필요 여부와 이유, 유아들의 일과 중 수업시간 포함 여부와 이유,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 대체교사 수당 지급 시간, 기준, 금액, 한도, 관련 자유의견 기술(1차에만)이었다. 델파이 질문지 1차는 〈부록 1〉, 2차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의견을 모아가는 델파이조사의 특성과 조사대상의 규모를 감안하여 집단별 차이분석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과 유아발달 관계,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조정 등 학계 등 전문가 검토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교육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업일수와 관련한 부처의 정책요구를 수렴하였다.

4. 연구범위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응지침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관련 논의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업일수나 수업시간에 좀 더 방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 01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 02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및 운영 관련 교육부 대응조치
- 03 유치원 운영 및 교사 교육시간 현황
- 04 선행연구
- 05 소결

II. 이론적 배경

1.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수업일수 관련 법

1)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수업일수 관련 내용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에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12조(수업일수 등)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로 연간 최소 수업일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1-1〉 유치원 교육시간 의미

관련 법	수업일수 관련 법 조문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 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2호, 2020. 9. 22., 일부개정].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수업일수가 정해졌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는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 공포와 2005년 동법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2005년 제정·시행된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유치원수업일수 내용에 수업일수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에는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와 함께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할청의 사전 승인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수업일수에 대한 원장의 자율권을 일부 제시하였다.²⁾

이후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최근 유아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791호, 2020. 6. 23., 일부개정]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의 수업에 관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등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2005년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도입, 2006년 월2회로 확대, 2012년부터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김재춘, 2012).

〈표 II-1-2〉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법조문 주요 개정이력

관련 법	수업일수 관련 법 조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998)	제45조(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한다) : 매학년 180일 이상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 이상
유아교육법시행령 (2005)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2012)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2020.6)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2020.8)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제정].
2)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05. 1. 30.]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정].
3)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12. 3. 1.] [대통령령 제23185호, 2011. 9. 30., 일부개정].
4)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1호, 2020. 6. 23., 일부개정].
5)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8. 14.] [대통령령 제30941호, 2020. 8. 14., 일부개정].

2) 초·중등학교 수업일수 관련 법

초·중등학교의 경우 2005년 월1회 주5일 수업제, 2006년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에도 연간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이었고(김재춘, 2012), 다만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수업일수를 1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간수업일수를 205일 정도로 편성하였다(김재춘, 2012:33). 또한 학교장이 초·중등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56호, 2007. 2. 1., 일부개정].

2011년 11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학년도부터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라 연간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감축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최저 수업일수를 따로 정하는 등 학교의 실정에 맞게 주 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에 주5일제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업일수를 3가지로 제시하였다.

2019년에 들어서는 초·중등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였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수업일수 관련 법조문 주요 개정이력

관련 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수업일수 관련 법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삭제 (2005. 1. 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 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 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 이상

관련 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수업일수 관련 법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2)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9)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자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56호, 2007. 2. 1., 일부개정].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3. 1.]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 10. 25., 일부개정].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 24., 일부개정].

3)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업일수 관련 주요 차이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업일수 관련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일수 조정이나 휴업일 조정에 대한 절차에서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초·중등학교는 수업일수 조정이나 휴업일 지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47조). 이에 반해 유치원의 수업일수 조정은 별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아닌 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휴업일 또한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 결정과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정기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강원도교육청, 2019:19).

둘째, 주 5일제 정착 이후 유아교육법시행령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경우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2010년 개정 이후 주5일제 등을 반영한 개정이력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주5일제 수업 도입 이전부터 오랜 기간 실제 주 5일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주5일제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수업일수는 조정하는데 반해, 유아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에 변동이 없다. 초·중등학교는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학교에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연간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반해 유치원은 과거부터 18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유치원 교육시간 관련 지침

1) 유치원 교육시간

유치원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박은혜 외(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행

위주체의 관점에 따라 ‘이용시간’, ‘무상교육시간’, ‘근무시간’, ‘운영시간’, ‘활동시간’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표 II-1-4〉 유치원 교육시간의 관점별 개념

관점	개념
유아	(유아 교육시간) 유아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는 적정 시간
부모	(기관 이용시간)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총 시간. 등원해서 하원하기까지 기관에서 보내는 총 시간
교원	(교원 업무시간) 교원의 업무시간과 유사. 그러나 교사의 업무시간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포함하여 교육시간과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	(비용 지원시간) 비용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시간. 국가가 유아교육기관에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하루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시간으로 1일 4~5시간.

자료: 박은혜, 박신영, 전홍주(2015). 유치원 적정 교육시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46(3), 1-22.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교육시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수업시수는 어떠한 교과내용을 얼마동안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각급 학교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소요된다고 결정된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박은혜, 박신영, 전홍주, 2015: 4). 그러나 교과중심이 아닌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수업시수가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수업시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박은혜 외, 2015: 4).

특히 2019 개정누리과정은 5개 영역 59개 내용으로 구분하여 3~5세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3~5세의 모든 ‘유아가 경험해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58-59),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강조하고 통합적 경험을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45-46), 교육시간을 분절된 수업시수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의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3~5세 유아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37). 교사는 유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단하여 이해하지 않고, 유아가 자신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37). 또한 연령에 따라 많은 세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유아가 스스로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해 가도록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37).

〈표 II-1-5〉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 및 편성·운영

구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5)	2019 개정 누리과정
누리과정 구성 중점	1. 구성방향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2.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3.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4.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5.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6.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누리과정 편성·운 영	1. 편성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바.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운영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구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5)	2019 개정 누리과정
	하여 운영한다. 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pp. 132-133.

우리나라의 유치원 연간수업일수와 1일 교육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수업일수는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과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200일 이상 이었고, 1981년 고시된 제3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현재와 같이 연간 180일 이상으로 연간 수업일수가 하향 조정되었고, 이는 발달수준에 비추어 연간수업일수가 유아들에게 무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교육부, 1999, 최은영, 장혜진, 2013:3 재인용). 1일 교육시간은 1차 유치원교육과정 시행 이후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까지 최소 3시간(180분)이었으며(2, 3차에서는 3~4시간 기준으로 조정 가능), 2011년 5세 통합과정과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으로 3~5시간으로 조정되었고, 2015년 누리과정 개정으로 다시 4~5시간으로 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4~5시간을 유지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표 II-1-6〉 유치원 수업일수 및 1일 교육시간 관련 변천사

구분	적용시기	연간 교육일수	1일 교육시간	비고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	1969~ 1979	연간교육일수 200일 이상	- 1일 교육일수 180분 기준	기후, 계절, 유아의 발달 정도, 교육내용 특성 감안해 시간 단위 조절
제2차 유치원교육과정	1979~ 1981	연간교육일수 200일	주당 18~24시간 하루 3~4시간 기준으로 조정가능	교육시간에 융통성 부여(일일교육 시간이 4시간정도 있을 수 있음)
제3차 유치원교육과정	1981~ 1987	연간교육일수 180일 이상	하루 3~4시간 기준으로 조정가능	연간 수업일수 하향 조정
제4차 유치원교육과정	1987~ 1992	연간교육일수 180일 이상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조정가능	교육시간은 유아의 실태,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조정 운영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	1992~ 1998	연간교육일수 180일 기준으로 조정가능	하루 180분 기준으로 따로 제시가능	

구분	적용시기	연간 교육일수	1일 교육시간	비고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1998~ 2007	- 연간교육일수 180일 이상	- 1일 교육일수 180분 기준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고려하여 조정 가능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 2011	연간교육일수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시간 180분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최소 기준임을 명시 시·도 교육청의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5세 누리과정	2011	연간교육일수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운영시간은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2	연간교육일수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운영시간은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	2015	연간교육일수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운영시간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시간 변경
개정 누리과정	2019	연간교육일수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운영시간 4~5시간을 기준으로 확장 가능	

자료: 1) 최은영, 장혜진(2013).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 운영시간 검토 및 개편방향.
 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3) 교육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4) 교육부(2015).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5) 교육부, 보건복지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2)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은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또한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기본보육, 연장보육, 그 밖의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기본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이며,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연장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며, 그 밖의 연장보육으로는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계속운영이 원칙이므로 방학 등 임시휴원이 있을 수 없다. 대신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자를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을 구성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교사들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또한 누리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실정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누리과정 운영 시간 이후, 운영 시간을 확장하여 편성·운영할 경우에도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다. 시·도교육청 수업일수 관련 지침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3조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교육부 고시 등에 의해 별도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편성지침에는 교육일수, 교육시간, 학급편성, 교육활동 계획 및 운영, 환경구성, 평가와 질 관리, 부모교육 및 참여, 특수/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 초등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교육청 모두 연간수업일수는 법정 최소기준인 180일을 제시하고 있었고, 교육과정 1일 운영시간은 세종, 전남 교육청은 1일 4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이외 시도교육청은 1일 4~5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로 교육활동 시작시간을 9시로 명시하되 9시 전후 30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7〉 시·도교육청 유치원 수업일수 현황

시·도 교육청	연간 수업(교육)일수	1일 수업(교육)시간
서울	180일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부산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대구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인천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광주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대전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울산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세종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 기준	운영시간 1일 4시간으로 편성
경기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강원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충북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충남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전북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교육활동 시작시간 9시 명시, 전후 30분 조정 가능
전남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 기준	운영시간 1일 4시간으로 편성
경북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경남	180일을 최소기준으로 자율적 운영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5시간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유아교육 계획(2020)
 3)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4)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유치원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5)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아이 유치원 교육과정
 6)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광주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7)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8)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울산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0).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10) 경기도교육청(2020).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1) 강원도교육청(2020). 강원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2) 충청북도교육청(2020).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유·초·중·고·특수
 13)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14) 전라북도교육청(2020).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5)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6) 경상북도교육청(2020).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7) 경상남도교육청(2019). 경상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및 운영 관련 교육부 대응조치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육부는 1월 2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의 대응태세 사전점검 대응을 강화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27.). 2020학년도 개학 등 관련사항을 2월 중으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20. 2. 2.).

이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2. 23.). 또한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 10분의 1범위인 18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2. 23.).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함께, 교육부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 또한 3주 간의 휴업으로 인해 유치원 등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의 10%인 18일 범위 내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

1, 2차 유치원 휴업명령에 이어 3월 17일에는 3차 개학연기를 통해 유치원의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연기하게 되면서 25일의 휴업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부는 1, 2차 개학연기까지 발생한 휴업일 15일은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였고, 3차 개학연기로 인한 휴업일 10일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180일에서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감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31.).

3차에 걸친 휴업명령과 개학연기 이후, 교육부는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등교개학이 어렵다는 판단과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31.).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31.).

이후 5월 6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4.). 유치원의 등교수업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된 이후 2주가 경과한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4.). 특히 유치원의 경우 유아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급보다 등교수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4.).

또한 교육부 등교수업 계획에 따라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7.). 여기에는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7.). 세부적으로는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기저질환이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7.).

그러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등교수업 일정이 1주 연기되어 5월 27일로 조정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11.). 이로 인해 유치원은 총 59일의 휴업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표 II-2-1〉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치원 개학연기 및 휴업일

1차 개학연기	2차 개학연기	3차 개학연기	4차 개학연기	5차 개학연기	총 휴업일
3.2.~3.6. (5일)	3.9.~3.20. (10일)	3.23.~4.3. (10일)	4.6.~5.19. (29일)	5.20~5.26. (5일)	59일

5월 24일에는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24.). 유치원은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지역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거리 두기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24.).

또한 6월 1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6. 17.). 이를 통해 유치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6. 17.).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하여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였고(교육부 보도자료, 2020. 7. 9), 이는 8월 14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표 II-2-2〉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유치원 운영관련 정책 변화

일자	교육부 정책·보도자료	주요내용
1. 27.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 강화 • 예방수칙 실천 유도
2.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부 대응	• 유치원 개학연기(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방안 -2019학년도는 법정 수업일수 180일 확보를 고려하여 우선 개학 연기 및 휴업을 실시하고,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 -2020학년도는 감염병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3월 개학 등 세부 지침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23.	전국 모든 유치원 신학기 개학연기 결정 (1차 개학연기)	• 2020년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 (휴업 5일) • 법정 수업일수 180일의 10분의 1(18일) 내에서 감축 가능
3. 2.	전국 모든 유치원 신학기 개학 추가연기 (2차 개학연기)	•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 (휴업 10일) • 여름·겨울방학 우선 조정, 이후 추가 휴업은 법정 수업일수 180일의 10분의 1(18일) 내에서 감축
3. 17.	전국 모든 유치원 신학기 개학 추가 연기 (3차 개학연기)	•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일 추가 연기 (휴업 10일) •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 →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 허용 •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심 중심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3. 31.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유치원 4차 개학연기)	•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온라인 개학 * 추가휴업(4.6.~4.8., 3일) •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 안내 예정

일자	교육부 정책·보도자료	주요내용
5. 4.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월 20일부터 시작 ※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등교수업 대비 유치원 방역 준비사항 매주 점검 및 관련 지침 제공
5. 7.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 방안	-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등원개학 이후 등원 중지 유아, 기저질환이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 제출시 출석인정 -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마련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호
5. 11.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서울 이태원동 일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등교수업 일정 1주 순연
5. 24.	등교수업 개시 전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및 교원 업무부담 경감	5월 27일 유치원 등교수업 -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을 탄력적으로 운영, 교육과정은 지역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유치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를 제작·공유하고,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6월에도 연장 제공 - 기존의 긴급돌봄은 방과 후 과정(돌봄)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교실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거리 두기 방안 마련 및 운영
6. 17.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 가능

일자	교육부 정책·보도자료	주요내용
7.9.	포스트코로나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 의회 간담회 결과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자료: 1) 교육부 보도자료(2020. 1. 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2)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0. 2.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부 대응.
 3)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3.)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4)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
 5)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17.)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6)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3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7)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4.)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8)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7.)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9)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11.)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10)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24.)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11) 교육부 보도자료(2020. 6. 17.)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12) 교육부 보도자료(2020. 7. 9.)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6일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하였고, 이후 4차례 이상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2. 26.; 최윤경 외, 2020).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이용에 대한 추가 대응지침과 가정통신문 안내를 실시하였다(최윤경 외, 2020). 또한 취업 중인 부모의 가족돌봄휴가제도 이용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에 대해 함께 안내하였으며, 가정내돌봄 중인 미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지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최윤경 외, 2020).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시간제 보육반 운영을 중단하였다(최윤경 외, 2020).

〈표 II-2-3〉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 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접촉의 최소화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정상 등원	- (특별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외부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집단행사 및 교육)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외부인 출입)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2단계	휴원 권고 - 긴급보육 실시 - 가정돌봄 권고	- (특별활동) 자제 원칙,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 (외부활동) 자제 원칙,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원칙, 불가피하게 진행할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3단계	휴원 - 긴급보육 실시 하되 최소화 권고	- (특별활동) 금지 - (외부활동)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자료: 보건복지부(2020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3. 유치원 운영 및 교사 교육시간 현황

가. 유치원 운영시간 및 운영 일수³⁾

1) 1일 정규 수업시간(교육과정 운영시간)

유아교육실태 자료에 의하면, 1일 정규수업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시작 시간은 8시 53분, 평균 종료시간은 13시 35분, 평균 운영시간은 4시간 41분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병설이 평균 시작시각이 8시 49분, 종료시각도 13시 24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났고, 평균 운영시간도 4시간 35분으로 가장 짧았다. 이에 반해 사립법인은 평균 시작시각과 평균 종료시각이 각각 9시 2분, 13시 53분으로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운영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가장 길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유치원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유치원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큰 유치원일수록 평균 운영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7).

〈표 II-3-1〉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

단위: 시간(개원)

구 분	평균 시작시각	평균 종료시각	평균 운영시간	(수)
전체	8시 53분	13시 35분	4시간 41분	(1,722)
기관 구분				
공립	8시 49분	13시 24분	4시간 35분	(899)
사립	8시 59분	13시 47분	4시간 48분	(823)
t	-11.1***	-14.6***	-7.7***	
기관 유형				
공립병설	8시 49분	13시 24분	4시간 35분	(839)
공립단설	8시 55분	13시 32분	4시간 37분	(60)
사립사인	8시 59분	13시 46분	4시간 47분	(717)

3)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구 분	평균 시작시간	평균 종료시간	평균 운영시간	(수)
사립법인	9시 02분	13시 53분	4시간 51분	(106)
F	45.4***	75.4***	20.5***	
소재지				
대도시	9시 01분	13시 43분	4시간 42분	(523)
중소도시	8시 53분	13시 36분	4시간 42분	(641)
읍면지역	8시 48분	13시 28분	4시간 40분	(559)
F	73.6***	28.9***	0.7	
규모				
50인 미만	8시 50분	13시 26분	4시간 37분	(761)
50인~100인 미만	8시 56분	13시 39분	4시간 44분	(412)
100인 이상	8시 59분	13시 44분	4시간 45분	(550)
F	41.7***	52.7***	12.1***	

*** p < .001.

자료: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

오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보면 시작 시간은 평균 7시 49분, 종료시간은 평균 9시, 운영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표 II-3-2〉 참고).

〈표 II-3-2〉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오전)

단위: 시간(개원)

구 분	평균 시작시간	평균 종료시간	평균 운영시간	(수)
전체	7시 49분	9시 00분	1시간 10분	(1,722)
기관 구분				
공립	7시 54분	8시 57분	1시간 03분	(899)
사립	7시 47분	9시 01분	1시간 13분	(823)
t	2.5*	-2.5*	-3.3***	
기관 유형				
공립병설	7시 55분	8시 58분	1시간 03분	(839)
공립단설	7시 49분	8시 54분	1시간 05분	(60)

구 분	평균 시작시각	평균 종료시각	평균 운영시간	(수)
사립사인	7시 46분	9시 00분	1시간 14분	(717)
사립법인	7시 54분	9시 04분	1시간 10분	(106)
F	3.6*	2.3	4.8**	
소재지				
대도시	7시 37분	9시 02분	1시간 26분	(523)
중소도시	7시 59분	8시 58분	0시간 59분	(641)
읍면지역	7시 57분	8시 57분	1시간 01분	(559)
F	45.9***	4.1*	61.0***	
규모				
50인 미만	8시 01분	9시 00분	0시간 58분	(761)
50인~100인 미만	7시 42분	8시 59분	1시간 17분	(412)
100인 이상	7시 48분	9시 00분	1시간 12분	(550)
F	18.1***	0.4	14.6***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

오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평균 4시간 1분으로 평균적으로 13시 45분에 시작하여 17시 46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3〉 참고).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병설이 평균 시작시각이 13시 26분, 종료시각도 17시 24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운영시간은 공립단설이 평균 4시간 29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의 평균운영 시간이 4시간 36분으로, 3시간 38분인 읍면지역보다 운영시간이 1시간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은 50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규모의 유치원보다 빠른 시간인 13시 30분에 시작하여 가장 빠른 시간인 17시 19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표 II-3-3〉 유치원 1일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오후)

단위: 시간(개원)

구 분	평균 시작시각	평균 종료시각	평균 운영시간	(수)
전체	13시 45분	17시 46분	4시간 01분	(1,722)
기관 구분				
공립	13시 28분	17시 28분	4시간 00분	(899)
사립	14시 04분	18시 06분	4시간 02분	(823)
t	-14.9***	-12.2***	-0.4	
기관 유형				
공립병설	13시 26분	17시 24분	3시간 58분	(839)
공립단설	13시 47분	18시 16분	4시간 29분	(60)
사립사인	14시 03분	18시 08분	4시간 05분	(717)
사립법인	14시 09분	17시 50분	3시간 41분	(106)
F	81.7***	66.4***	6.6***	
소재지				
대도시	13시 53분	18시 29분	4시간 36분	(523)
중소도시	13시 46분	17시 38분	3시간 52분	(641)
읍면지역	13시 37분	17시 15분	3시간 38분	(559)
F	12.7***	216.3***	106.9***	
규모				
50인 미만	13시 30분	17시 19분	3시간 50분	(761)
50인~100인 미만	13시 51분	18시 03분	4시간 11분	(412)
100인 이상	14시 01분	18시 10분	4시간 08분	(550)
F	66.6***	123.4***	16.4***	

*** $p < .001$.

자료: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

2) 연간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2017 전국 유아교육실태 조사(2017)에 의하면,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206.1일로 법정 최소 수업일수인 180일을 26일 정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 수업일수는 221.9일, 공립유치원 수업일수는 191.8일로 사립유치원 수업일수가 공립유치원보다 30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립사인유치원이 222.5일로 가장 길었고 공립병설유치원 191.5일로 가장 적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최소 190일인 초등학교와 유

사한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97.3일, 50인~100인 미만이 207.3일, 100인 이상이 평균 217.6일로 나타나, 유치원 규모가 클수록 수업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 전국 유아교육실태 조사(2017)에 응답한 유치원의 평균 방학일수는 39.7일이었고, 공립유치원은 55일, 사립유치원을 23일로 나타나 공립유치원의 방학일수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2.4배(32일) 더 길었다. 공립병설유치원이 55.3일로 방학일수가 가장 길었고, 사립사인 유치원이 22.3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규모별로는 방학일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48.3일, 50인~100인 미만이 40.5일, 100인 이상 유치원이 27.2일로 나타나, 유치원 규모가 클수록 방학일수가 짧게 나타났다.

〈표 II-3-4〉 유치원 평균 연간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단위: 일(개원)

구 분	연간 수업일수	방학 일수	(수)
전체	206.1	39.7	(1,722)
기관 구분			
공립	191.8	55.0	(899)
사립	221.9	23.0	(823)
t	-40.5***	30.9***	
기관 유형			
공립병설	191.5	55.3	(839)
공립단설	195.3	50.9	(60)
사립사인	222.5	22.3	(717)
사립법인	217.9	27.6	(106)
F	553.3***	302.9***	
소재지			
대도시	206.1	40.0	(523)
중소도시	207.3	38.0	(641)
읍면지역	204.9	41.3	(559)

구 분	연간 수업일수	방학 일수	(수)
F	1.8	2.2	
규모			
50인 미만	197.3	48.3	(761)
50인~100인 미만	207.3	40.5	(412)
100인 이상	217.6	27.2	(550)
F	170.7***	106.9***	

*** $p < .001$.

자료: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

나.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⁴⁾

최은영 외(2019)의 연구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퇴근 시각을 조사한 결과, 8시 1분부터 8시 30사이에 출근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시 31분부터 8시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응답자의 94%정도가 7시 31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출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I-3-5〉 참고). 7시 1분에서 7시 30분 까지라고 응답한 비율도 3.7%로 나타났으며, 사립법인 유치원의 경우, 7시 1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사립사인 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담당학급별로는 혼합연령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7시 1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높았다(최은영 외, 2019: 155).

한편 퇴근은 오후 5시 1분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 6시 1분부터 오후 6시 30분이 23.8%, 오후 6시 31분부터 7시가 20.1%, 오후 7시 1분부터 8시가 9.4%로 순이었으며, 오후 5시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2%로 나타났다.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혼합연령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7.7%로 높았으며, 이른 출근시각으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은영 외, 2019: 155-156).

4) 최은영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표 II-3-5〉 사립유치원 교사 출·퇴근 시각과 일일 총 근무시간

단위: %(명)

구분		출근시각				퇴근시각						근무시간	
		7:01 ~7:30	7:31 ~8:00	8:01 ~8:30	8:31 이후	17:00 이전	17:01 ~18:00	18:01 ~18:30	18:31 ~19:00	19:01 ~20:00	20:01 이후	사례수	평균
전체		3.7	40.6	53.3	2.5	1.2	45.1	23.8	20.1	9.4	0.4	(244)	10.2
재직 기관 유형	사립법인 유치원	8.6	51.4	37.1	2.9	-	51.4	20.0	20.0	8.6	-	(70)	10.3
	사립사인 유치원	1.7	36.2	59.8	2.3	1.7	42.5	25.3	20.1	9.8	0.6	(174)	10.2
담당 학급	만3세반	-	48.3	50.0	1.7	-	35.0	30.0	20.0	15.0	-	(60)	10.4
	만4세반	2.4	44.6	50.6	2.4	1.2	45.8	21.7	22.9	8.4	-	(83)	10.2
	만5세반	3.4	33.0	63.6	0.0	1.1	51.1	20.5	18.2	8.0	1.1	(88)	10.1
	혼합연령반	30.8	30.8	15.4	23.1	7.7	46.2	30.8	15.4	-	-	(13)	10.1

자료: 최은영 외(2019),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p.156

사립유치원 교원의 일일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응답되었으며, 기관 유형, 담당학급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II-3-6〉 참고). 이는 2017년 유아교육실태조사 결과인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평균 9시간 49분(교육부, 2017)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근무시간은 여전히 8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은영 외, 2019:156).

한편 사립유치원 교원의 일과 중 업무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수업이 121.6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과후과정 98.5분, 행정업무 78.3분, 점심시간 76.8분, 수업준비 73분, 등하원 지도 67.4분, 교실정리 및 청소 59.1분, 전화상담 54.4분, 차량지도 51.1분, 간식시간 48.3분, 일지작성 46.5분, 회의 31.9분 순으로 나타났다(최은영 외, 2019:156).

〈표 II-3-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과 중 업무내용

단위: 분

구분		등하원 지도	차량 지도	수업 준비	교육 과정 수업	방과후 과정	행정 업무	교실 정리 및 청소	회의	간식 시간	점심 시간	전화 상담	일지 작성
전체		67.4	51.1	73.0	121.6	98.5	78.3	59.1	31.9	48.3	76.8	54.4	46.5
기관 유형	사립법인	62.4	51.7	49.3	138.8	114.0	70.6	56.3	35.0	48.8	94.0	70.7	29.0
	사립사인	69.0	51.0	79.7	115.4	92.0	82.9	60.1	30.4	48.1	70.9	44.8	52.3
담당 학급	만3세반	73.7	59.2	79.7	118.2	101.3	73.0	66.2	21.6	44.0	76.5	30.0	-
	만4세반	61.9	52.9	44.8	118.4	84.2	89.1	63.7	36.9	37.9	76.2	45.1	64.0
	만5세반	68.5	43.2	99.3	129.1	111.8	71.0	53.5	32.5	57.4	76.9	68.8	29.0
	혼합연령반	55.0	30.0	43.3	112.4	79.0	67.0	44.3	29.3	64.7	80.4	-	-
근무 경력	1년~3년 미만	80.8	71.4	42.6	86.9	90.3	61.8	72.1	21.5	47.7	73.7	34.0	-
	3년~5년 미만	59.4	50.0	95.4	126.2	89.9	108.4	45.8	27.9	50.9	76.3	94.9	29.0
	5년~10년 미만	63.9	43.5	79.4	140.1	112.5	78.0	57.1	35.1	43.5	78.2	52.8	64.0
	10년 이상	72.1	40.0	81.6	133.0	81.8	67.9	76.8	-	65.0	84.6	12.3	-
연령	20대	67.9	51.9	73.2	115.9	103.6	80.9	59.5	31.2	45.9	73.4	67.4	46.5
	30대	66.1	48.1	78.3	132.8	81.2	64.9	67.6	37.4	52.8	85.9	40.9	-
	40대 이상	67.0	55.0	59.3	130.7	133.2	83.0	35.2	19.5	59.0	65.0	39.8	-

자료: 최은영 외(2019).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p.157

4. 선행연구

가. 유치원 교육시간 관련 연구

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교육시간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있다.

박은혜, 박신영, 전홍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 연령별로 적정 1일 교육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만 3세는 평균 196분(3시간 16분), 만 4세는 234분(3시간 54분), 만 5세는 264분(4시간 24분)이 1일 교육시간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유아 연령이 어릴수록 1일 교육시간이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전 연령에서 공립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적정 1일 교육시간을 짧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의 1일 교육시간과 현재의 교육시간을 토대로 도출되었거나,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의 구분이 분명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박은혜 외, 2013).

적정 수업시간에서 급간식이나 휴식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유치원 수업시간에 급·간식, 휴식, 전이시간 등을 포함하지 않거나(신은수, 박은혜, 김병주, 2011; 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최은영, 장혜진, 2013:16에서 재인용), 유치원 급간식 시간 1시간과 휴식 시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휴식과 활동 간 전이시간도 수업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최은영·장혜진, 2013:15에서 재인용).

또한 김낙홍(2009)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하루 평균 수업시간을 알아본 결과 4시간 미만인 23.3%, 4~5시간이 39.1%, 6~7시간이 22.6%, 8시간 이상이 15.0%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따라 하루 평균 수업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김낙홍, 2009). 또한 전체적으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하루 평균 수업시간은 4시간 미만에서 4~5시간의 두 시간대를 합친 수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의 특성상 6~7시간과 8시간 이상의 두

시간대를 합친 수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낙홍, 2009). 김은영(2007)의 연구에서 직무영역별 직무수행시간을 분석하였을 때, 교수학습 실재를 위한 직무수행시간이 19.02시간(3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수학습 준비를 위한 직무수행시간 9.72시간(18.03%)으로 나타났다.

나. 누리과정과 유아발달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과거 종일제, 반일제 유치원에서의 운영시간과 유아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누리과정과 유아발달

이민수(2014)에 의하면 누리과정에 기초한 신체활동은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에 따라 교사의 비의존성, 내적 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수, 2014). 유아는 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심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 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내적통제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민수, 2014). 또한 유아들은 누리과정에 기초한 신체활동이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이민수, 2014).

지성애 외(2014)에 의하면 누리과정 편성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대부분이 학급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편성, 놀이중심의 편성, 유아의 발달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편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편성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누리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잘 인식하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반영하고 있었으며,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활동과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지성애 외, 2014). 결국 유아들의 발달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인성·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보았다(지성애 외, 2014).

임명희(2020)의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과정에서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민감하고 반응적인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며(정현주, 2020; 임명희, 2020에서 재인용), 교사들이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맥락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를 위한 동기부여와 놀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자칫 유아들에게는 또 다른 강제성과 놀이의 제약을 갖게 할 수 있어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교사 역할에 대한 고민도 언급하였다(임명희, 2020). 교사들은 유아기 때는 그 시기에 맞는 동요를 불러야 하는데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놀이, 유아놀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지원, 그리고 유아놀이 및 놀이지원과 연계된 대집단 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 시기에 배워야 하는 동요나 주제나 정보 등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임명희, 2020).

조운주(2020)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아·놀이중심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는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인식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으로 과거에 더 놀고 싶어 했던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시키고, 집중력, 주도성, 적극성, 문제해결력 등이 향상되고, 놀이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등 놀이가 확장·발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놀이중심으로 운영했을 때, 스스로 재미있게 노는 유아들은 소수이고, 사회성이 없는 유아는 놀이 상황을 어려워하고 활동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체계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조운주, 2020). 그리고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준비 및 실행하면서 안전과 학교준비에 대한 우려,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인지적인 측면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조운주, 2020). 특히 교사들은 만 4~5세 경우에 쓰기의 필요성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실 환경도 다르고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데 대집단 활동을 통해서 앉아 있는 등의 수업태도나 집중태도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운주, 2020).

오지연, 노진아(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행동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놀이 행동을 할 때에 유아가 즐겁게 하는 활동은 놀이로 생각했지만, 그 놀이행동으로 다른 활동과의 연계가 어렵거나 놀이의 확장이 되지 않을 때는 놀이로 인정하여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인식하였다(오지연, 노진아, 2020).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자발성으로 인하여 교사 주도의 활동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유아의 자발성을 인정하여 유아의 놀이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교사가 개입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오지연, 노진아, 2020). 특히 지나친 교사의 개입이 유아의 놀이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게 될 때 어디까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오지연, 노진아, 2020).

2) 유치원 운영시간과 유아발달

송강숙, 박수진, 김영희(2008)는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가 종일반보다 반일반에서 더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인숙(2005)은 반일반의 경우, 짧은 교육시간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주는 데에 제한적이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 모두 종일반에 비해서 반일반의 운영구조가 유아나 기관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최은영, 장혜진, 2014에서 재인용). Vlietstra(1981)는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Bentley와 Wilson(1989)은 반일반에서는 똑 같은 교육목적을 더 짧은 시간에 성취하도록 유아에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반일반의 유아가 보다 문제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최은영, 장혜진, 2014에서 재인용).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고, 종일반의 유아들이 과제 수행능력이 높고, 사회·정서적인 면에서 덜

위축되며, 분노도 덜 나타낸다고 하였다(Thornburg et al., 1990; 원진, 2001;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 2008에서 재인용).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반일반에 비해서 종일반의 유아들이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이 적으며 보다 공격적이고 좌절에 대해서도 잘 참지 못하며, 하루 종일 기관에서 지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하며,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김희영, 2001;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 2008에서 재인용). 송강숙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는 반일반 유아가 종일반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유발하고,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연장반보다 반일반과 종일반 유아가 더 많이 나타났다.

신체적인 발달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 종일반의 경험으로 운동발달과 활동성이 증진되고 신체적인 발달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Stewart, 1995;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 지적 발달의 측면에서는 반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보다 종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이후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ryan et al., 1992; Ericker & Mathur, 1997;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서발달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Schwartz, 1983; 박종숙, 2001;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Egeland & Hieste, 1995; Hoewes & Hamilton, 1992;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발달의 측면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가 좀 더 사회적이며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Harman, 1982; Stewart, 1990;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 이와 다르게 국내연구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들이 반일제 프로그램의 유아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낮고, 수동적인 대처를 많이 한다(김희형, 2002; 안지영 외, 2007; 황윤세, 2010에서 재인용)는 결과도 존재한다. 황윤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종일제 유아가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고, 유치원 적응에서 전체적으로 반일제 유아의 평균이 더 높았다.

박영미(2009)의 연구에서 시간 연장반보다 종일반에서 수업하는 유아가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냈고 특히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

동 등 문제행동 전반에 걸쳐 시간연장반 유아들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종일반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행동이나 위축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미, 2009).

정유정 외(2006)의 연구에서 종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 유아의 정서지능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위 영역으로는 자기조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인식에서는 두 집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유아의 정서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종일제에 비해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소결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법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부 대응조치, 유치원 운영과 교육시간 현황,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이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유치원 수업일수에 있어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수업일수 조정이나 휴업일 지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의 수업일수 조정 절차는 지침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상에도 이러한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은 운영 특성상 수업시수라는 개념이 없고,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이 놀이와 통합적 경험을 통해 유아의 배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1일 4~5시간인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분절된 시간단위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2017년 기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4시간 41분이며, 공립은 4시간 35분, 사립은 4시간 48분으로 차이가 있었다(교육부, 2017).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206.1일이지만, 공립은 191.8일, 사립은 221.9일로(교육부, 2017) 그 편차가 많았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최은영 외, 2019)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8시간에서 2시간이나 초과되었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근거로 공사립의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원 수업시간에 급간식, 휴식, 전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와 1일 교육시간과 유아의 발달 사이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III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분석

01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

02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국제비교

03 소결

Ⅲ.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분석

1.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

수업일수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의 연간 수업일수를 말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에 따라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10분의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따라 매년 4월 유치원 수업일수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가. 분석대상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유치원은 2018년 8,803개원, 2019년 8,565개원, 2020년 8,420개원이었다. 이중 연령별로 해당 연령 값이 0이거나 없는 경우(2018년 2,502개원, 2019년 2,453개원, 2020년 2,457개원), 2018년과 2019년에 연간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을 넘지 않은 유치원 6개(2018년 4개원, 2019년 2개원)를 제외하였다. 또한 2020년 유치원 수업일수 공시자료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 연기와 긴급 돌봄 등 교원이 원아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시입력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변경되어⁵⁾, 해당 공시자료는 다음 해 추가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대상은 <표 III-1-1>과 같다.

5) 유치원알리미, 공지사항: <https://e-childschool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표 Ⅲ-1-1〉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대상

단위: 개원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전체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2018년	전체	4,781	5,444	6,181	974	640	6,277	6,297
	국공립	1,258	1,768	2,338	279	637	2,360	2,361
	국립	3	3	3		3	3	3
	공립(단설)	380	379	379	2	301	380	380
	공립(병설)	875	1,386	1,956	277	333	1,977	1,978
	사립	3,523	3,676	3,843	695	3	3,917	3,936
	사립(법인)	488	499	522	80	1	535	543
	사립(사인)	3,035	3,177	3,321	615	2	3,382	3,393
2019년	전체	4,681	5,323	5,979	865	721	6,092	6,110
	국공립	1,407	1,892	2,425	291	718	2,459	2,459
	국립	3	3	3		3	3	3
	공립(단설)	401	400	399	2	331	401	401
	공립(병설)	1,003	1,489	2,023	289	384	2,055	2,055
	사립	3,274	3,431	3,554	574	3	3,633	3,651
	사립(법인)	458	473	493	80	1	509	516
	사립(사인)	2,816	2,958	3,061	494	2	3,124	3,135
2020년	전체	4,590	5,245	5,872	843	823	5,947	5,963
	국공립	1,533	2,023	2,522	296	821	2,549	2,550
	국립	3	3	3		3	3	3
	공립(단설)	458	458	458	1	385	458	458
	공립(병설)	1,072	1,562	2,061	295	433	2,088	2,089
	사립	3,057	3,222	3,350	547	2	3,398	3,413
	사립(법인)	439	450	473	61	1	482	486
	사립(사인)	2,618	2,772	2,877	486	1	2,916	2,927

자료: 1)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2)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1년 1월 4일 인출.

나. 유치원 수업일수 분석

1)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 수업일수

코로나19 감염병 이전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유치원 수업일수를 분석하면 <표 III-1-2>와 같다.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에 의하면 분석대상 유치원의 3세 수업일수는 2018년은 210.1일, 4세는 208.0일, 5세는 206.2일, 특수학급 183.9일, 방과후과정⁶⁾은 227.9일이었고, 2019년은 3세는 209.5일, 4세는 207.5일, 5세는 205.8일, 특수학급 184.0일, 방과후과정은 229.6일로 2018년과 거의 같았다.

설립유형별로 유치원 수업일수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연령별로 183~184일로 나타났고, 혼합연령은 187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중 3개인 국립유치원은 192~193일 수준으로 공립유치원보다 10일 정도 수업일수가 더 길었다.

사립유치원은 220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보였고, 특수학급 수업일수가 2018년 214일, 2019년 211일로 사립유치원 연령별 수업일수보다는 다소 짧았다. 법인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평균보다 4일정도 수업일수가 짧았고, 사립유치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인사립유치원은 수업일수가 221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 돌봄까지를 포함한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2019년 230일이었고, 국공립은 224일, 사립은 237일로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상에 180일 이상 이상을 연간수업일수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연령별 교육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은 3~4일, 사립유치원은 40일 정도 연간수업일수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국공립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 기준을 준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주로 보고 유치원이 주5일제 운영된다고 보면 최소 연간수업일수보다 2개월을 더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주5일제로 토요일을 포함하여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면 총 117일의 휴일이 있었다. 사립유치원은 휴일을 제외한 248일 중 221일을 운영하여 거의 연중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6)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학기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과정과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과정 기본운영 일수를 합한 수치임(유치원알리미,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지침,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reference/detail.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표 Ⅲ-1-2〉 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

단위: 일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2018년	전체	210.1	208.0	206.2	195.5	183.9	227.9
	국공립	183.4	183.5	183.9	187.1	183.8	220.1
	국립	192.3	192.3	193.0	0.0	192.7	205.3
	공립(단설)	183.7	183.7	184.1	183.5	183.8	228.9
	공립(병설)	183.3	183.4	183.9	187.1	183.7	219.4
	사립	219.7	219.8	219.7	221.4	214.0	236.8
	사립(법인)	213.7	213.8	213.9	214.6	186.0	233.4
	사립(사인)	220.6	220.7	220.6	222.5	228.0	237.4
2019년	전체	209.5	207.5	205.8	194.6	184.0	229.6
	국공립	183.6	183.6	183.9	186.8	183.9	223.4
	국립	193.3	193.3	194.0	0.0	194.0	164.0
	공립(단설)	184.4	184.4	184.8	184.0	184.5	231.7
	공립(병설)	183.3	183.3	183.7	186.8	183.4	222.7
	사립	220.6	220.7	220.7	222.5	211.3	237.3
	사립(법인)	216.4	216.5	216.6	218.1	185.0	235.2
	사립(사인)	221.3	221.4	221.3	223.4	224.5	237.6

자료: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시도별로 유치원 수업일수를 보면, 2019년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이었다. 반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시도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등이었다. 광주광역시 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가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은 수업일수가 186일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59개 공시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 56개, 사립유치원 3개원으로 설립유형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표 III-1-3〉 시·도교육청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

단위: 일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2018년	전체	210.1	208.0	206.2	195.5	183.9	227.9
	서울	204.7	203.6	204.0	214.3	181.5	250.3
	부산	209.5	209.9	209.6	211.4	183.6	241.1
	대구	211.0	208.9	208.2	204.9	183.1	230.2
	인천	209.7	205.2	204.1	194.5	181.8	232.5
	광주	225.9	220.2	216.8	208.6	186.6	234.4
	대전	215.9	210.9	209.1	206.4	182.0	231.8
	울산	214.6	211.7	210.8	202.7	184.8	234.2
	세종	186.2	186.2	186.3	185.1	183.0	224.4
	경기	209.5	206.6	204.0	189.1	183.8	221.8
	강원	213.1	210.3	206.4	189.7	185.2	224.9
	충북	203.7	203.5	202.0	186.6	183.1	225.2
	충남	210.1	208.1	206.8	196.2	187.2	214.5
	전북	214.1	212.6	210.0	190.1	184.6	223.2
	전남	210.0	209.3	205.4	193.0	185.3	229.3
	경북	210.3	209.1	207.9	198.4	185.2	213.3
	경남	216.4	212.6	209.9	194.8	186.3	232.8
	제주	210.7	208.8	195.6	189.4	186.5	223.4
2019년	전체	209.5	207.5	205.8	194.6	184.0	229.6
	서울	205.0	204.0	204.4	214.9	181.5	249.4
	부산	210.5	210.9	210.7	213.7	183.4	241.2
	대구	211.1	207.6	207.6	206.3	182.3	234.1
	인천	209.8	205.0	204.0	196.8	181.9	235.1
	광주	225.0	219.9	215.8	204.4	183.3	235.8
	대전	216.2	211.3	210.0	203.9	183.3	233.0
	울산	212.6	211.5	210.5	202.9	184.9	236.0
	세종	185.7	185.8	186.0	185.0	182.7	225.0
	경기	207.8	205.3	202.8	188.3	183.6	223.9
	강원	210.8	208.7	205.3	189.6	185.3	229.0
	충북	202.0	201.9	200.8	187.4	183.0	231.2
	충남	211.0	208.9	206.7	193.2	186.8	214.5
	전북	212.3	211.2	208.7	189.1	182.7	225.5
	전남	209.3	209.5	205.1	192.9	185.5	233.5
	경북	209.9	208.7	207.3	197.5	188.8	214.0
	경남	216.3	213.0	210.2	193.5	188.5	233.0
	제주	214.9	204.3	196.7	189.7	189.0	229.8

자료: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사립유치원이 수업일수를 많이 초과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일수록 수업일수를 많이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업일수 초과운영의 이유로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가정에서는 수업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오마이뉴스, 2020년 3월30일자), 정규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토요일에는 별도의 돌봄 과정이 있지만 이는 추가 보육비를 내야해서 수업일수를 많이 운영하면 그만큼 학부모의 추가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오마이뉴스, 2020년 3월30일자).

2)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2020학년도) 수업일수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시기인 2020학년도의 유치원 수업일수를 분석하면 <표 III-1-4>와 같다.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에 의하면 분석대상 유치원의 3세 수업일수는 179.5일, 4세는 178.0일, 5세는 176.7일, 혼합연령 180.1일, 특수학급 161.4일, 방과후과정은 201.6일이었다.

설립유형별로 유치원 수업일수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연령별, 혼합연령, 특수학급이 160~161일 정도로 나타났고, 국립유치원은 176~176일 수준으로 공립유치원보다 13~15일 정도 수업일수가 더 많았다. 반대로 방과후과정 수업일수의 경우에는 국립은 149.0일인데 반해 공립(단설)은 206.9일, 공립(병설)은 198.1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함께 3-5세반 수업일수는 189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보였고, 혼합연령반은 190.5일, 특수학급은 176.0일,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203.0일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업일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법인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평균보다 4일정도 수업일수가 낮았고, 사립유치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인사립유치원은 수업일수가 190일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1-4〉 설립유형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2020년	전체	179.5	178.0	176.7	180.1	161.4	201.6
	국공립	160.7	160.3	160.4	160.8	161.3	199.6
	국립	175.3	175.3	176.0		176.0	149.0
	공립(단설)	162.3	162.3	162.6	143.0	162.8	206.9
	공립(병설)	160.0	159.7	159.9	160.9	159.9	198.1
	사립	188.9	189.1	188.9	190.5	176.0	203.0
	사립(법인)	185.4	185.7	185.2	183.4	152.0	201.6
	사립(사인)	189.5	189.7	189.5	191.4	200.0	203.3

자료: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1년 1월 4일 인출.

2020학년도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를 보면, 부산과 세종,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수업일수가 대체로 170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의 수업일수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1-5〉 시·도교육청별·연령별 유치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단위: 일

구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2020년	전체	179.5	178.0	176.7	180.1	161.4	201.6
	서울	174.8	174.3	174.5	183.7	160.8	218.0
	부산	167.0	167.2	167.1	169.7	160.3	182.8
	대구	179.8	178.1	177.0	181.1	163.9	194.5
	인천	175.3	172.8	171.9	173.1	159.1	190.6
	광주	187.2	185.0	182.9	189.1	164.1	194.4
	대전	180.5	179.0	178.1	182.5	157.0	191.8
	울산	189.2	186.8	186.0	187.3	158.1	211.3
	세종	165.5	165.6	165.6	162.0	162.5	194.9
	경기	181.4	179.0	177.1	170.9	161.9	201.5
	강원	181.1	177.3	174.9	170.0	160.1	198.5
	충북	173.8	173.6	171.7	165.6	156.7	186.9
	충남	184.3	182.0	181.1	182.6	167.7	224.2
	전북	182.6	182.6	181.6	181.2	168.8	193.1
	전남	174.6	174.3	172.2	170.4	160.2	194.0
	경북	182.7	181.8	180.9	193.3	164.7	186.9
	경남	189.6	188.7	185.1	191.1	161.8	221.6
	제주	171.7	156.9	153.2	157.5	144.6	229.4

자료: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1년 1월 4일 인출.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총 5차에 걸친 등교수업 연기 기간은 총 59일로 수업일수 기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일수가 121일 미만인 경우는 0.2%, 121~162일 미만은 9.1%, 162~180일 미만은 57.5%, 180일 이상은 33.2%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유치원 수업일수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121일 미만은 0.2%, 121~162일 미만은 20.2%, 162~180일 미만은 70.9%, 180일 이상은 8.7%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121일 미만 0.3%, 121~162일 미만 0.7%, 162~180일 미만 47.4%, 180일 이상은 51.6%로 국공립유치원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Ⅲ-1-6〉 설립유형별·수업일수 구간별 유치원 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구분		121일 미만	121~162일 미만	162~180일 미만	180일 이상	전체
2020 년	전체	0.2	9.1	57.5	33.2	100.0
	국공립	0.2	20.2	70.9	8.7	100.0
	국립	0.0	16.6	71.0	12.4	100.0
	공립(단설)	0.2	21.1	70.9	7.8	100.0
	공립(병설)	0.0	0.0	33.3	66.7	100.0
	사립	0.3	0.7	47.4	51.6	100.0
	사립(법인)	0.8	1.6	52.5	45.1	100.0
	사립(사인)	0.2	0.5	46.6	52.6	100.0

자료: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1년 1월 4일 인출.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에 유치원 수업일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면 〈표 Ⅲ-1-6〉과 같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는 전체적으로 29.2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수업일수 감소일을 보면, 국립유치원은 18.0일, 공립(단설)은 22.2일, 공립(병설)은 23.8일이었고, 사립(법인)은 31.9일, 사립(사인)은 31.8일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유치원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180일 이상을 충족한

유치원은 33.2%에 불과하였고, 180일 미만인 유치원이 66.8%로 대다수였다. 특히 설립유형별로 보면 2020학년도 연간수업일수 180일 미만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91.3%, 사립유치원은 4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이후 유치원 수업일수

단위: 일, %

구분	연간 수업일수 변화(3~5세반)			연간수업일수(180일) 비율(2020년)	
	2019년	2020년	차이	180일 이상	180일 미만
전체	205.9	176.7	-29.2	33.2	66.8
국공립	183.9	160.4	-23.5	8.7	91.3
국립	193.6	175.6	-18.0	66.7	33.3
공립(단설)	184.6	162.4	-22.2	12.4	87.6
공립(병설)	183.7	159.9	-23.8	7.8	92.2
사립	220.7	188.9	-31.8	51.6	48.4
사립(법인)	216.7	184.8	-31.9	45.1	54.9
사립(사인)	221.4	189.6	-31.8	52.6	47.4

자료: 1)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2)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1년 1월 4일 인출.

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일수 비교

1)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 수업일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기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인 2019년 초등학교 수업일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공시된 초등학교 전체의 연간 수업일수 평균은 191.2일로 나타났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 191.2일, 사립은 191.8일로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최소 기준일인 190일에 근접하였다.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연간수업일수 또한 법정 연간수업일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9년 공시 대상 초등학교 중 연간 수업일수 최댓값은 217일이었고, 최솟값은 188일이었다.

〈표 Ⅲ-1-8〉 설립유형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9년)

구분	연간 수업일수
전체	191.2
국공립	191.2
국립	191.1
공립	191.2
사립	191.8

자료: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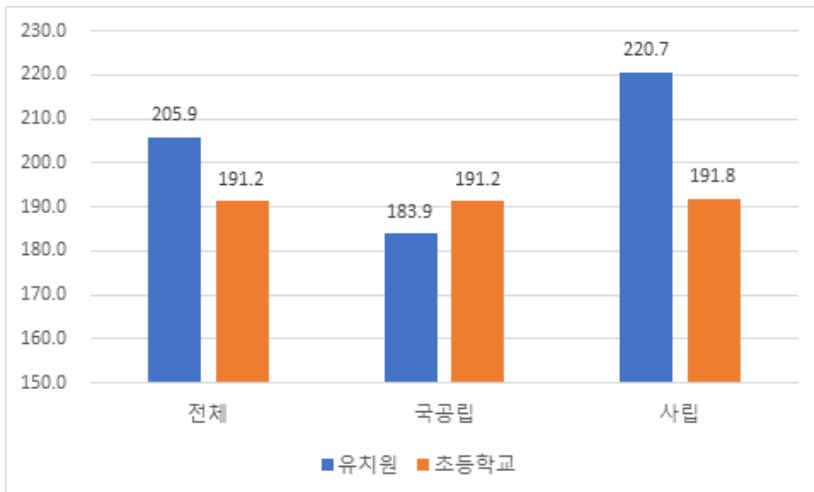
〈표 Ⅲ-1-9〉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전, 2019년)

구분	연간 수업일수
전체	191.2
서울	191.9
부산	191.8
대구	190.4
인천	192.0
광주	190.8
대전	192.6
울산	192.6
세종	190.6
경기	190.5
강원	190.7
충북	190.4
충남	190.9
전북	190.9
전남	191.7
경북	191.4
경남	191.9
제주	190.1

자료: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학년도인 2019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유치원 연간수업일수는 206일, 초등학교는 191일로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가 초등학교보다 15일 더 많았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수업일수는 184일, 초등학교 191일로 국공립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과 190일에 근접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221일, 사립초등학교는 192일로 사립초등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었으나, 사립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보다 40일 이상 더 많았다.

[그림 III-1-1]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 비교(코로나19 이전, 2019년)



자료: 1)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2)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 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2)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2020학년도) 수업일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인 2020학년도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0학년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보다 17일 정도 더 적게 운영하고 있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일(19일) 범위 내에서 연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수업일수가 183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일이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Ⅲ-1-10〉 설립유형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구분	연간 수업일수
전체	173.1
국공립	173.0
국립	172.4
공립	173.0
사립	182.6

자료: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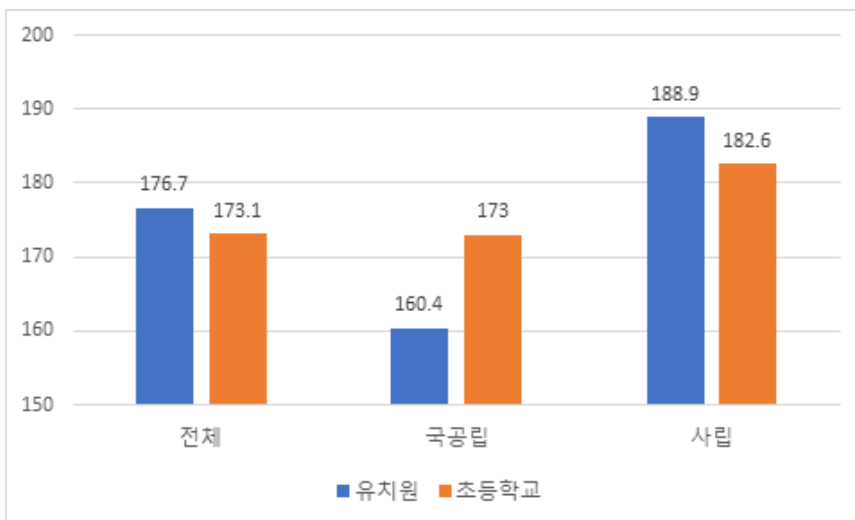
〈표 Ⅲ-1-11〉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수업일수(코로나19 이후, 2020년)

구분	연간 수업일수
전체	173.1
서울	173.4
부산	173.4
대구	172.4
인천	173.6
광주	172.2
대전	173.5
울산	172.8
세종	172.6
경기	173.2
강원	173.8
충북	173.4
충남	172.4
전북	172.7
전남	173.5
경북	173.0
경남	172.9
제주	172.4

자료: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인 2020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를 비교하면 [그림 III-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치원 연간수업일수는 176.7일, 초등학교는 173.1일로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가 초등학교보다 4일정도 더 많았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수업일수는 160.4일, 초등학교는 173일로 국공립유치원의 연간수업일수가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188.9일, 사립초등학교는 182.6일로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보다 9일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일수 비교(코로나19 이후, 2020년)



자료: 1)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1년 1월 4일 인출.

2)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r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2.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국제비교

가. 국가별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OECD국가와 EU 모두 평균 194일이었고, 벨기에(플랑드르)가 158일로 수업일수가 가장 적고, 독일과 노르웨이는 225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교사1인당 연간 교육시간은 OECD국가는 평균 993시간, EU는 평균

1,042시간이었고, 멕시코가 519시간으로 연간 교육시간이 가장 적고, 독일은 1,755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국가 간 격차는 연간 1,2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연간 수업주수는 OECD국가는 평균 40주, EU는 평균 41주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미국이 36주로 연간 수업주수가 가장 적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47주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유치원 교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40주, 194일 동안 연간 993시간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36주, 180일 이상 연간 782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이 OECD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커 사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원아가 많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의 교사당 1일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은 5.1시간이었고, 우리나라는 4.3시간이었다. 호주의 유치원 교사의 1일 수업시간은 평균 3.2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독일은 7.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연간 38주, 194일 동안 778시간을 가르치며, 1일 수업시간은 4.3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국가별·연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수업시간

구분	주	연간 수업주수		연간 수업일수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		교사당 1일 수업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호주	1	41	41	196	199	624	880	3.2	4.4
오스트리아	1	m	38	m	183	m	792	-	4.3
캐나다		m	37	m	185	m	m	-	-
칠레	2	38	38	179	179	999	999	5.6	5.6
콜롬비아	1	40	40	192	192	768	960	4.0	5.0
코스타리카	1	41	41	196	196	804	1,176	4.1	6.0
체코	1	44	39	210	188	1,302	620	6.2	3.3
덴마크	1	a	a	a	a	a	718	-	-
에스토니아	1	46	35	222	173	1,332	588	6.0	3.4
핀란드	3		38	m	188	m	677	-	3.6
프랑스	1	36	36	162	162	900	900	5.6	5.6
독일	1	46	40	225	193	1,755	698	7.8	3.6
그리스	2	36	36	176	176	836	660	4.8	3.8

구분	주	연간 수업주수		연간 수업일수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		교사당 1일 수업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헝가리	2	43	38	206	181	1,318	652	6.4	3.6
아이슬란드	1	46	37	219	174	1,577	603	7.2	3.5
아일랜드	1	m	37	m	181	m	905	-	5.0
이스라엘	1	38	38	180	180	1,019	835	5.6	4.6
이태리	3	42	39	189	174	945	766	5.0	4.4
일본	4	m	41	m	203	m	747	-	3.7
한국	3	36	38	180	190	782	676	4.3	3.6
라트비아	5,6	39	35	190	170	1,368	572	7.2	3.4
리투아니아	2	a	36	a	174	640	835	-	4.8
룩셈부르크	1	36	36	176	176	880	810	5.0	4.6
멕시코	1	40	40	195	195	519	780	2.7	4.0
네덜란드	2	40	40	200	200	930	930	4.7	4.7
뉴질랜드	1	41	38	205	192	1,230	922	6.0	4.8
노르웨이	2	47	38	225	190	a	741	-	3.9
폴란드	2	45	37	215	176	1,075	554	5.0	3.2
포르투갈	2	37	37	169	169	845	761	5.0	4.5
슬로바키아	1	44	38	208	188	1,144	733	5.5	3.9
슬로베니아	1	46	38	218	188	1,308	620	6.0	3.3
스페인	1	37	37	176	176	869	871	4.9	4.9
스웨덴	-	47	a	224	a	m	a	-	-
스위스	5,6	39	38	185	183	756	785	4.1	4.3
터키	1	37	37	180	180	898	718	5.0	4.0
미국	5,6	36	36	180	180	1,011	1,004	5.6	5.6
벨기에(Flemish)	1	37	37	158	158	731	746	4.6	4.7
벨기에(French)	1	37	37	177	177	766	708	4.3	4.0
영국	-	38	38	190	190	a	a	-	-
스코틀랜드	2	38	38	190	190	855	855	4.5	4.5
OECD 평균	-	40	38	194	183	993	778	5.1	4.3
EU23 평균	-	41	37	194	180	1,042	738	5.4	4.1
브라질	-	42	42	200	200	m	m	-	-
러시아	5,6	m	34	m	170	m	561	-	3.3

주: 1) 1: 일반적 수업시간, 2: 최대 수업시간, 3: 최소 수업시간, 4: 학년 초에 계획된 평균 수업시간, 5: 실제 교육시간 (라트비아 유치원 제외), 6: 참조연도가 라트비아/스위스 2018년, 러시아 2017년, 미국 2016년

2) a: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자료 없음

m: 미제출 및 무응답

자료: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23을 재구성함.

나. 국가별 유치원 교사 법정근로시간 및 학교 근무시간

OECD(2020) 자료에 대부분 국가에서 교사의 근무 시간은 근무규정에 명시된 법정 교육시간이 있고,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기타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 및 수업이외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정하거나 총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교사들은 연간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일하고 있다(OECD, 2020a). OECD 국가 절반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급에 대해 교사의 수업 및 수업이외 활동을 위한 학교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었고, 이들 국가의 3분의 1 이상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간 학교 근무시간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OECD, 2020a). 이에 반해 이들 국가의 절반(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및 터키)은 유치원 교사가 고등학교교사보다 20%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라트비아와 뉴질랜드에서 40%를 초과하고 있다(OECD, 2020a). 특히 헝가리, 아이슬란드, 스웨덴 및 터키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가 20% 이상 학교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a).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학교 근무시간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법정 근로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연간 법정 근로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1,440시간, 초등학교 이상 학교급 교사는 1,52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1일 8시간)에 최소 수업일수인 180과 190일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유치원 교사 수업시간에는 짧은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휴식 횟수나 기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수업시간에 교사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 III-2-2〉 국가별·연간 교사 학교근무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주	학교 근무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호주	1	839	1,198	1,195	1,195	a	a	a	a
오스트리아	1	m	a	a	a	m	1,776	1,776	a
캐나다		m	m	m	m	m	a	a	a
칠레	2	1,839	1,839	1,839	1,839	1,971	1,971	1,971	1,971

구분	주	학교 근무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콜롬비아	1	1,152	1,152	1,152	1,152	1,536	1,536	1,536	1,536
코스타리카	1	a	a	a	a	a	a	a	a
체코	1	a	a	a	a	1,680	1,504	1,504	1,504
덴마크	1	1,635	1,635	1,635	1,635	1,635	1,635	1,635	1,635
에스토니아	1	1,610	a	a	a	1,610	1,540	1,540	1,540
핀란드	3	m	815	730	670	a	a	a	a
프랑스	1	954	954	a	a	1,607	1,607	1,607	1,607
독일	1	a	a	a	a	1,756	1,756	1,756	1,756
그리스	2	1,116	1,116	1,158	1,158	a	a	a	a
헝가리	2	1,476	1,158	1,158	1,152	1,648	1,648	1,648	1,648
아이슬란드	1	1,760	1,610	1,610	1,440	1,800	1,800	1,800	1,800
아일랜드	1	m	1,073	811	811	a		a	a
이스라엘	1	1,055	1,225	1,177	1,198	1,055	1,225	1,177	1,198
이태리	3	a	a	a	a	a	a	a	a
일본	4	a	a	a	a	1,736	1,736	1,736	1,736
한국	3	a	a	a	a	1,440	1,520	1,520	1,520
라트비아	5,6	1,560	1,050	1,050	1,050	1,760	1,320	1,320	1,320
리투아니아	2	a	1,512	1,512	1,512	a	1,512	1,512	1,512
룩셈부르크	1	1,060	990	859	859	1,500	1,394	1,229	1,229
멕시코	1	772	800	1,167	a	a	a	a	a
네덜란드	2	a	a	a	a	1,659	1,659	1,659	1,659
뉴질랜드	1	1,820	1,536	1,243	950	a	a	a	a
노르웨이	2	a	1,300	1,225	1,150	a	1,688	1,688	1,688
폴란드	2	a	a	a	a	1,720	1,408	1,408	1,392
포르투갈	2	1,013	929	808	808	1,295	1,295	1,275	1,275
슬로바키아	1	m	m	m	m	1,560	1,560	1,560	1,560

구분	주	학교 근무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
슬로베니아	1	m	m	m	m	m	m	m	m
스페인	1	1,140	1,140	1,140	1,140	1,425	1,425	1,425	1,425
스웨덴	-	1,792	1,360	1,360	1,360	a	1,767	1,767	1,767
스위스	5,6	a	a	a	a	1,930	1,930	1,930	1,930
터키	1	998	813	745	745	1,580	1,580	1,580	1,580
미국	5,6	1,441	1,443	1,449	1,446	m	m	m	m
벨기에(Flemish)	1	916	916	a	a	a	a	a	a
벨기에(French)	1	a	a	a	a	962	962	a	a
영국	-	a	a	a	a	1,265	1,265	1,265	1,265
스코틀랜드	2	1,045	1,045	1,045	1,045	1,365	1,365	1,365	1,365
OECD 평균	-	m	m	m	m	1,562	1,549	1,563	1,555
EU23 평균	-	m	m	m	m	1,528	1,495	1,514	1,498
브라질	-	m	a	a	a	a	a	a	a
러시아	5,6	a	a	a	a	m	m	m	m

주: 1) 1: 일반적 수업시간, 2: 최대 수업시간, 3: 최소 수업시간, 4: 학년 초에 계획된 평균 수업시간, 5: 실제 교육시간
(라트비아 유치원 제외), 6: 참조연도가 라트비아/스위스 2018년, 러시아 2017년, 미국 2016년

2) a: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자료 없음

m: 미제출 및 무응답

자료: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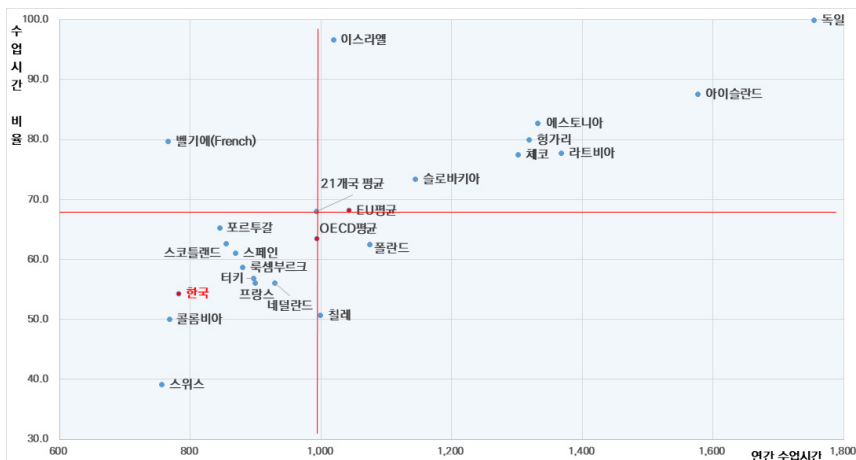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아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수업준비, 교사연수, 회의, 평가 등 수업 이외에도 다양하게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이외의 부가적인 활동은 다른 국가의 유치원 교사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에 수업에 소요되는 법정 근로시간 비율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III-2-1]을 보면 유치원 교사에게 있어 수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수업이외의 업무활동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총 근로시간과 수업시간 자료가 있는 21개국을 분석한 결과, 21개국 유치원 교사는 총 근로시간 중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비율은 평균 68%였

고, OECD 평균은 63.6%, EU 평균은 68.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54.3%로 평균보다는 낮았고, 스위스가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비율이 39.2%로 가장 낮고, 독일이 99.9%로 가장 높았다(부록 표 III-2-1) 참조).

[그림 III-2-1]에 따르면 수업에 소요되는 수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간 수업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 국가에서 다른 형태를 보였다. 칠레(999시간), 이스라엘(1,010시간), 폴란드(1,075시간)는 유치원 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법정 근로시간에서 수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칠레(50.7%), 이스라엘(96.6%), 폴란드(6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벨기에(French)와 헝가리는 수업시간 비율이 각각 79.7%와 80.0%로 거의 같은 반면, 연간 법정 근로시간은 각각 766시간, 1,318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2-1] 유치원 교사 연간 근로시간 중 수업시간 비율 국제비교



자료: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치원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이 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았다. 예외적으로 칠레와 스코틀랜드는 모든 학교급에서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동일하였고,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멕시코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오히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보다 연간 수업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국가별·학교급별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2019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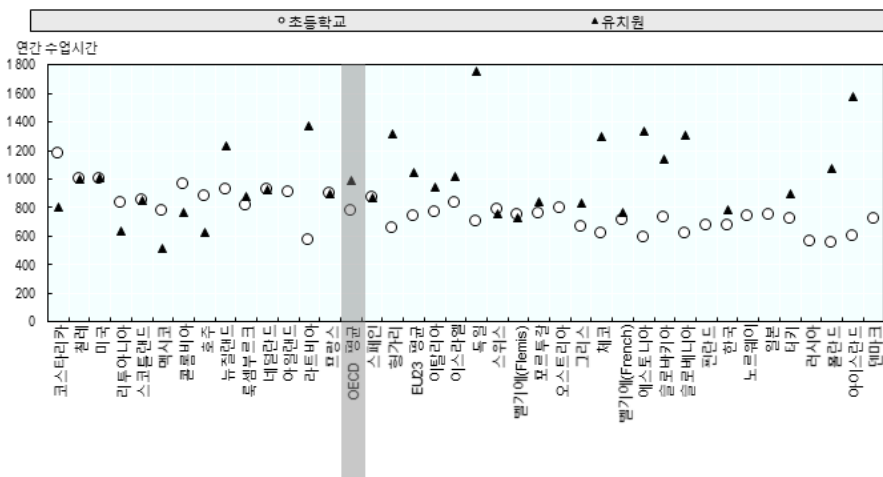
국가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코스타리카	804	1,176	1,254	1,254
칠레	999	999	999	999
미국	1,011	1 004	966	966
리투아니아	640	835	907	907
스코틀랜드	855	855	855	855
멕시코	519	780	1 014	853
콜롬비아	768	960	845	845
호주	624	880	820	820
뉴질랜드	1,230	922	840	760
룩셈부르크	880	810	739	739
네덜란드	930	930	720	720
아일랜드	-	905	704	704
라트비아	1,368	572	621	695
프랑스	900	900	684	684
OECD 평균	993	778	712	680
스페인	869	871	669	669
헝가리	1,318	652	652	648
EU23평균	1,042	738	663	645
이탈리아	945	766	626	626
이스라엘	1,019	835	694	623
독일	1,755	698	651	622
스위스	756	785	748	621
벨기에(Flemis)	731	746	665	620
포르투갈	845	761	605	605
오스트리아	-	792	617	598
그리스	836	660	611	597
체코	1 302	620	620	592
벨기에(French)	766	708	650	589
에스토니아	1 332	588	606	571
슬로바키아	1 144	733	649	564
슬로베니아	1 308	620	620	564
핀란드	-	677	592	551
한국	782	676	517	545

국가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노르웨이	-	741	663	523
일본	-	747	615	511
터키	898	718	503	503
러시아	-	561	483	483
폴란드	1 075	554	475	470
아이슬란드	1 577	603	603	456
덴마크	-	718	709	

자료: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23의 내용을 재구성함.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특히 [그림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 평균은 993시간, 초등학교 교사는 778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이 28% 정도 더 많았다.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연간 2배 이상 수업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은 782시간, 초등학교 교사는 676시간을 보였다.

[그림 III-2-2] 국가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2019년 기준)



자료: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13.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연도별 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와 EU 평균 수업일수는 2015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십 년 간 수업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OECD나 EU 평균 대비 10일 이상 적고 최근 몇 년사이 그 차이가 좀 더 커졌다.

교사1인당 수업시간은 OECD평균은 1,000시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EU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연간 수업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치원 교사의 연간 교사 수업시간 산출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고(2017년까지는 40분을 1시간으로 환산), 휴식시간이나 횡수가 공식화된 것은 없으나 이를 수업시간 중에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쉬는 시간을 수업시간에 포함하였다(OECD, 2020b).

〈표 III-2-4〉 연도별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수업주수, 교사1인당 수업시간 국제비교

단위: 일, 주, 시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수업일수	한국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OECD 평균	193	191	191	190	191	196	195	194
	EU평균	191	190	190	190	191	197	195	194
수업주수	한국	36*	36	36	36	36	36	36	36
	OECD 평균	40	40	40	40	40	41	40	40
	EU평균	40	40	40	40	40	41	41	41
교사1인당 수업시간	한국	-	583	574	585	568	543	789	782
	OECD 평균	1,257	1,001	1,005	1,005	1,001	1,044	1,024	993
	EU평균	1,206	988	995	1,019	1,034	1,093	1,062	1,042

주: 2011년 한국의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표시)는 법적으로 180일 이상이나, OECD(2013)에는 220일로 기재되어 있어 180일로 수정하여 제시함.

- 자료: 1) OECD(2013).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01.
 2) OECD(2014).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84.
 3) OECD(2015).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58.
 4) OECD(2016).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36.
 5)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388.
 6) OECD(2018).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391.
 7) OECD(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27.
 8)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 423.

3. 소결

유치원 및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기초하여 유치원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인 2019년 유치원의 전체 수업일수를 보면, 3세 수업일수는 209.5일, 4세는 207.5일, 5세는 205.8일, 특수학급 184.0일, 방과후과정은 229.6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은 연령별로 184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220일 정도로 거의 연중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일수록 수업일수를 많이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인 2020년 유치원 수업일수는 교육부 정책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29.2일이 감소하였고, 유치원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180일 이상을 충족한 유치원은 33.2%, 180일 미만인 유치원은 66.8%로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유치원의 3세 수업일수는 179.5일, 4세는 178.0일, 5세는 176.7일, 특수학급 161.4일, 방과후과정은 201.6일이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수업일수는 160~161일 정도로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은 189일 수준이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인 2019년 초등학교 전체의 연간 수업일수 평균은 191.2일로 법정 연간수업일수 최소 기준일인 190일에 근접하였으며, 이는 유치원과 15일 정도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인 2020년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보다 17일정도 더 적게 운영하고 있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일(19일) 범위 내에서 연간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OECD 국가의 유치원 교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40주, 194일 동안 연간 993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는 연간 36주, 180일 이상 연간 762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이 OECD국가에 비해 낮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사당 1일 수업시간 또한 OECD 평균은 5.1시간, 우리나라는 4.3시간으로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1일 수업시간이 더 적었다.

넷째, OECD 국가들은 법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다

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 평균은 993시간, 초등학교 교사는 778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이 28% 정도 더 많았다. 유치원 교사 총 근로시간 중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비율은 OECD 평균은 63.6%, EU 평균은 68.2%이며, 우리나라는 54.3%로 평균보다는 낮았다.

IV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전문가 인식

01 유치원 수업일수

02 유치원 수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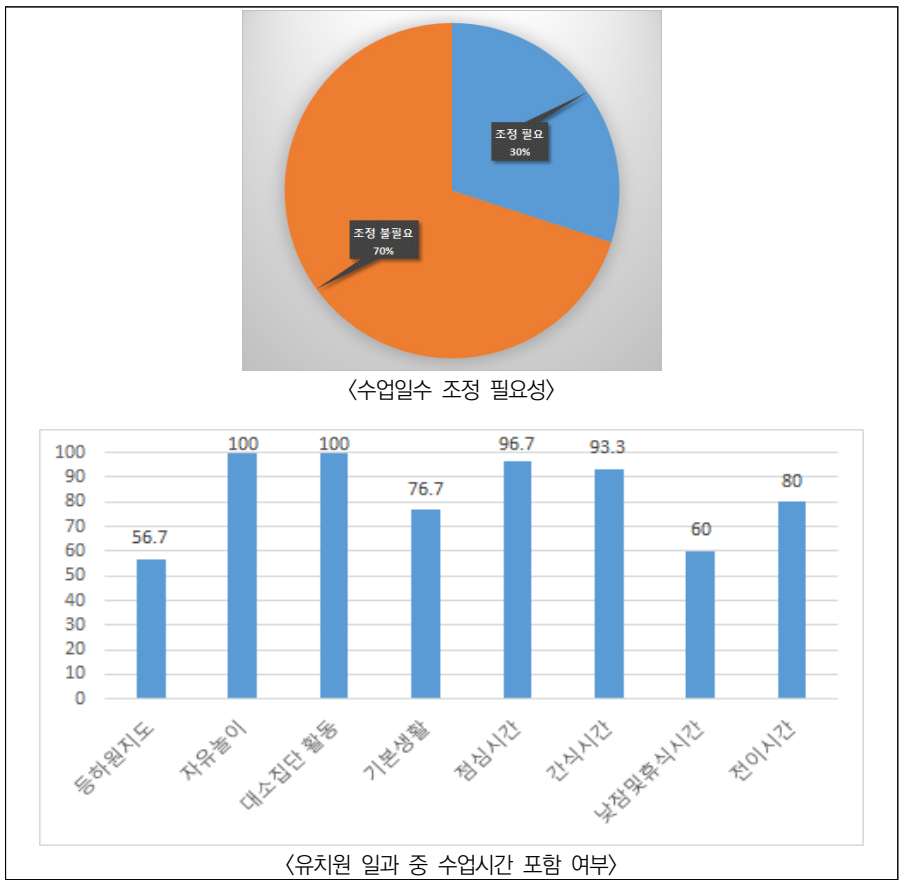
03 소결

IV.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전문가 인식

본 장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일수와 수업시간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여기서는 2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에 대한 주요 결과

단위: %



1. 유치원 수업일수

현재의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180일의 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0%,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감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220일까지 과도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제시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업일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 55.6%,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법정 수업일수만큼 무상급식비 등이 지원되므로 수업일수를 초·중등학교와 같이 1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 22.2%, ‘수업일수를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 11.1% 순이었다.

〈표 IV-1-1〉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	비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감축할 수 있어야 함	66.7
사립유치원의 경우 220일까지 과도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제시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	66.7
수업일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5.6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 요청이 있었음	22.2
수업일수를 초·중등학교와 같이 190일 이상으로 해야 함 (법정 수업일수만큼 무상급식비 등이 지원됨)	22.2
수업일수를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민원이 많음	11.1

수업일수 조정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최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린이 집과 경쟁하며 사립유치원이 200일 이상 수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무의미

하다'는 응답이 38.1%, 'OECD 국가나 다른 학교급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수업일수 조정보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등원이나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 '법정 수업일수를 조정해도 실제 수업일수 운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과 '수업일수를 지나치게 감축할 경우 학교로서의 교육기능이 약화된다는' 응답이 28.6%, '수업일수 180일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적절하다'는 응답이 19.0%, '현재도 특수상황에는 휴업일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이 14.3%,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범위만 확대하면 된다'는 응답과 '수업일수 조정보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불필요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	비율
최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음	71.4
어린이집과 경쟁하며 사립유치원이 200일 이상 수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무의미함	38.1
OECD 국가나 다른 학교급과의 균형이 필요함	33.3
수업일수 조정보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등원이나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33.3
법정 수업일수를 조정해도 실제 수업일수 운영에 큰 변화 없음	28.6
수업일수를 지나치게 감축할 경우 학교로서의 교육기능이 약화됨	28.6
수업일수 180일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적절함	19.0
현재도 특수상황에는 휴업일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음	14.3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범위만 확대하면 됨	9.5
수업일수 조정보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9.5

2. 유치원 수업시간

유치원에서 수업시간을 규정한다면 유치원의 일과 중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간을 질문한 결과, 바깥놀이를 포함한 자유놀이 시간과 대소집단 활동은 응답자 모두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시간들은 이견이 있었다. 항목별로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하원지도 56.7%, 기본생활 76.7%, 점심시간 96.7%, 간식시간 93.3%, 낮잠 및 휴식시간 60.0%, 전이시간 80.0%로 나타났다.

개별 일과에 대해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IV-2-1>과 같다. 먼저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등하원지도, 기본생활, 점심시간, 간식시간은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낮잠 및 휴식시간은 유아에게 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전이시간은 교육적 상황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과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업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항목마다 좀 다르게 나타났다. 등하원지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생활지도에 포함되며 초등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본생활은 수업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며 초등의 중간 쉬는 시간에 해당한다는 응답,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은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이라는 응답, 낮잠 및 휴식시간은 교육보다 돌봄의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 전이시간은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V-2-1> 일과 중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포함해야 하는 이유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하원 지도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47.1)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35.3)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17.6)	-생활지도에 포함, 초등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 필요함(53.8)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38.5) -누리과정 운영시간임(7.7)

구분	포함해야 하는 이유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본생활 (손씻기, 화장실 대녀 오기 등)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56.5)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30.4)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8.7) -기타(모두 해당, 4.3)	-수업시간 사이에 이루어짐(초등의 중간 쉬는 시간)(50.0)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33.3)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16.7)
점심시간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51.7)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31.0)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13.8) -기타(모두 해당, 3.4)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100.0)
간식시간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57.1)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28.6)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10.7) -기타(모두 해당, 3.6)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50.0)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50.0)
낮잠 및 휴식시간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33.3)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27.8)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27.8) -심신건강에 중요함(5.6) -기타(모두 해당, 5.6)	-교육보다 돌봄의 성격이 강함(58.3) -개별유아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41.7)
전이시간	-교육적 상황으로 활용 가능함(29.2)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시간임(29.2)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20.8)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짐(16.7)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4.2)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임(60.0)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40.0)

교사의 업무 시간 중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을 100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0.4: 39.6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은 60:40이 적당하다는 응답 빈도가 48.3%로 절반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70:30 비중이 20.7%, 50:50 비중이 17.2% 순이었다.

〈표 IV-2-2〉 교사 업무시간 중 수업(교육) 및 수업(교육) 준비시간 비중

단위: %

교사 업무시간 비중			응답 비율
계	수업(교육) 시간	수업(교육) 준비시간	
100	50	50	17.2
100	55	45	3.4
100	56	44	3.4
100	60	40	48.3
100	65	35	6.9
100	70	30	20.7

현재 초등학교는 교사가 병가 등으로 다른 대체교사가 수업에 투입될 때, 1교시 40분당 1만원의 보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누리과정 1일 운영시간을 4-5시간으로 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처럼 분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⁷⁾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대체교사 수당 지급 시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누리과정 운영시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대체교사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인 4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1시간을 기준으로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시간을 기준으로 11,000원’ 16.7%, 30분, 40분, 1시간을 기준으로 1만원을 지급하자는 응답이 각각 13.3%였다. 기타 응답으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 기준으로 4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외부 대체교사와 내부 대체교사의 지급기준액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 시간강사 수당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의 시간강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을 초등 대체수업 시 1교시 40분당 1만원의 보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적용해,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60분당 1만5천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384>, 2020년 11월 25일 인출).

〈표 IV-2-3〉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

단위: %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	비율
30분을 기준으로 1만원	13.3
40분을 기준으로(초등학교에 준함) 1만원	13.3
1시간을 기준으로(시수개념이 없으므로) 1만원	13.3
1시간을 기준으로 11,000원(시간강사 기준에 준함)	16.7
1시간을 기준으로 15,000원(30분 단위로 7,500원씩 분할 지급)	33.3
대체교사의 일과를 상대적 인정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3.3
기타	6.7

대체교사 수당의 1일 한도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1일 7만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기타 응답 17.2%, 9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응답 13.8%,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응답 10.3%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업이나 누리과정 운영의 관점에서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5,000원씩 12만원 한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 대체교사의 최저학력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8시간으로 하자는 의견,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자는 의견, 금액에 대한 한도보다는 지급 영역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교사 수당 1인 한도는 지급기준과 연동하여 누리과정 1일 운영시간 4~5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표 IV-2-4〉 대체교사 수당 한도와 금액

단위: %

대체교사 수당 한도	비율
4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6.9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6.9
7만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함	27.6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10.3
9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13.8

대체교사 수당 한도	비율
한도를 정하지 않음	17.2
기타	17.2

3. 소결

전문가델파이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관련 전문가는 수업일수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70%로 더 높았다. 수업일수 조정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은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어느 정도 수업일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실제 수업일수로 인해 수업일수의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일과 중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유놀이 시간과 대소집단 활동에는 100% 동의하였으나, 그 밖의 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에 있어서는 각 97%, 93%가 수업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전이시간 80%, 기본생활 78%, 낮잠 및 휴식시간 60%, 등하원 지도 57%가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포함의 이유로는 교사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지도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이시간도 교육적 상황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수업시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초등학교와 유사한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육보다는 돌봄의 성격이 강한 시간은 수업 시간에서 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수업시간 산정 시 기본생활습관지도나 돌봄의 성격이 강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치원에 수업일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체교사 수당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지급 대상 시간부터 누리과정 운영시간인지 업무시간인지 의견이 반으로 갈리며, 대체교사 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도 1시간 기준 15,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다른 의견에도 골고루 응답하였다. 한도액 또한 1일 7만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지만, 의견이 다양하고 기타 의견으로 아예 다른 방식의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V

정책 제언

- 01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 02 유치원 수업일수 최대일수에 대한 논의
- 03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근거 마련 필요

V.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수행 결과에 따라 유치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가.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개정

초·중등학교의 경우 2019년에 주5일 수업이 현장에 정착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수업일수)와 제47조(휴업일 등) 조문을 개정하여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수업일수 조정이나 휴업일에 학교행사시 수업일수 포함 여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은 수업일수는 유치원 원장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휴업일 또한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 결정과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인 수업일수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나, 다양한 여건이나 환경 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등 결정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V-1-1〉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u>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u>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u>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u>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 원격수업 근거 법령 마련

또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⁸⁾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4

8)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조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⁹⁾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병행 등을 하고 있으나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선 유아교육법상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 이후 이에 상응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V-1-2〉 유아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2. 유치원 수업일수 최대일수에 대한 논의

현행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유치원 관련 전문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더 많았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어느 정도 유치원 차원에서 수업일수 조정

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20&lsiSeq=220731#0000>, 2020년 11월 28일 인출)

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알리미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립과 사립간 연간 수업일수에서의 큰 차이는 유치원의 수업일수에 대한 상한선 설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치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유치원 전체 수업일수가, 3~5세는 206~210일, 특수학급 184일, 방과후과정은 228일 수준이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연간 183~184일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연간 220일 정도로 거의 연중 운영되고 있어 35일 정도 수업일수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학기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과정과 방학 중에 운영하는 돌봄형태의 방과후과정을 합한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를 보면 2019년 220일 수준으로, 237일인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수업일수와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럼에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의 특성과 운영여건 상 유치원 운영일이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볼 때, 향후 교사의 업무부담과 유아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업일수에 대한 최대 상한선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근거 마련 필요

유치원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은 수업시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고, 1일 4~5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초·중등학교처럼 분절적으로 수업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다른 대체교사를 수업에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 델파이 결과에서도 일관된 의견의 수렴보다는 다양한 지급기준과 한도액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는 아직 수업시수라는 개념 정립이 없다는 점, 교육과정이 4~5시간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급기준을 시간(분) 단위로 쪼개어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강조하고 통합적 경험을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분절된 수업시수의 개념과는 맞

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60분을 기준으로 시간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되 실제 대체교사 보결수당은 1일 4~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분에 1만원인 초등학교 보결수당과 비교한다면 60분에 1만 5천원으로 산출하여 4시간 60,000원이나 5시간 7만 5천원으로 하여 1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19). 2019학년도 강원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강원도교육청(2020). 2020학년도 강원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교육청(2020).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상남도교육청(2019). 경상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상북도교육청(2020).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부(2015).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 교육부(2017). 유아교육 실태조사 내부자료.
- 교육부(202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일부개정 포함)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부, 보건복지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부 보도자료(2020. 1. 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
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0. 2.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
육부 대응.
-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3.)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
원방안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17.)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3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4.)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7.)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11.)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 교육부 보도자료(2020. 5. 24.)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 6. 17.)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 7. 9.)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 김낙홍(2009).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2), 345-364.
- 김은영(2007). 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시간에 대한 인식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539-560.
-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재춘(2012). 주5일수업제에서 연간수업시수의 개선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0(2), 27-49.
-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유치원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박영미(2009).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463-475.
- 박은혜, 박신영, 전홍주(2013). 유치원 적정 교육시간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46(3), 1-22.
- 박은혜, 신은수, 조형숙(2012). 유아기 기본능력에 기초한 연령별 누리과정 개편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2.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

- 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유아교육 계획(20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0).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2008). 유치원 운영시간, 부모의 학습관여,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35-51.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오지연, 노진아(2020).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20(3), 83-112.
-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울산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이민수(2014). 누리과정에 기초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17.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아이 유치원 교육과정.
- 임명희(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20(3), 1-2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3).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법정교원확보방안 공청회.
-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전라북도교육청(2020)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정유정, 이연희, 김규수(2006). 유치원의 일과 운영 프로그램에서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집단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지능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391-412.
- 조운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초기의 유아교사 경험. 육아지원연구, 15(3), 105-125.
- 지성애, 홍혜경, 정정희, 이민정, 고영미, 김낙홍. (20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현장적용 현황과 발전방안.
- 지인숙(2005). 유치원 운영시간과 부모의 학습 관여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시간활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

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박진아, 김동훈, 김태우, 장혜진(2019)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장혜진(2013).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 운영시간 검토 및 개편방향.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장혜진(201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관한 쟁점 및 과제. 인문학논총, 36, 459-484.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충청북도교육청(2020).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유·초·중·고·특수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황윤세(2010).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 행동과 적응 간의 관계.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9(2), 187-203.

OECD(2013).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4).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5).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6).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8).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20a).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20b), “Sources, methods and technical notes”, in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관련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1호, 2019. 9. 10., 일부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2호, 2020. 9. 22., 일부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05. 1. 30.]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정].

-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12. 3. 1.] [대통령령 제23185호, 2011. 9. 30., 일부 개정]
-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1호, 2020. 6. 23., 일부 개정].
-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 2020. 8. 14.] [대통령령 제30941호, 2020. 8. 14., 일부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56호, 2007. 2. 1.,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3. 1.]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 10. 25.,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 24., 일부개정].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20&lsiSeq=220731#0000>, 2020년 11월 28일 인출.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384>, 2020년 11월 25일 인출.
-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713&cID=10201&pID=10200, 2020년 10월 6일 인출.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0529093458932546a9e4dd7f_30, 2020년 10월 6일 인출.
- 유치원알리미. 공지사항.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0년 10월 5일 인출.

유치원알리미 공시 자료 다운로드.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2021년 1월 4일 인출.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지침,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reference/detail.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7551, 2020년 10월 15일 인출.

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2020년 10월 15일 인출.

한국유아교육신문,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3>, 2020년 10월 6일 인출.

부록 1. 전문가 조사 질문지(1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치원 수업(교육)일수나 수업(교육)시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김 동 훈 부연구위원 02-398-○○○○ dhkim@kicce.re.kr
 김 은 영 선임연구위원 02-398-○○○○ keycandy@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초등학교는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206일 정도(2017년 기준, 국공립 192일, 사립 222일)인 반면, 초등학교는 기준에 거의 근접하여 190일 정도로 수렴됩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업일수는 유치원이 초등학교보다 10일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수업일수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향 조정되어야 함 (____ 일, 이유: _____)
- ② 현재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이유: _____)
- ③ 하향 조정되어야 함 (____ 일, 이유: _____)

2.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업일수 조정이나 휴업일 지정이 필요할 경우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처도록 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에도 이러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입해야 한다. (이유: _____)
- ②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유: _____)

3. 현재 누리과정은 1일 4~5시간(240분~300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적정 교육시간은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초등학교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1일 적정 교육시간은 몇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함 (____ 분, 이유: _____)
- ②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야 함.

연령	1일 적정 교육시간(분)	이유
3세		
4세		
5세		

7. 유치원 수업일수나 수업시수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문가 조사 질문지(2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치원 수업(교육)일수나 수업(교육)시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김 동 훈 부연구위원 02-398-○○○○ dhkim@kicce.re.kr
김 은 영 선임연구위원 02-398-○○○○ keycandy@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의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180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차 응답 결과: 조정 필요 46.7%, 조정 불필요 53.3%

☐ ① 예 (☞ 1-1로)

☐ ② 아니오 (☞ 1-2로)

[참고]

유치원 수업일수 :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초·중·고등학교 수업일수: 매 학년도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1-1.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로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 ① 수업일수 180일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너무 많음
☐ ②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감축할 수 있어야 함
☐ ③ 수업일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④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 요청이 있었음
☐ ⑤ 사립유치원의 경우 220일까지 과도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제시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
☐ ⑥ 수업일수를 초중등학교와 같이 190일 이상으로 해야 함
(법정 수업일수만큼 무상급식비 등이 지원됨)
☐ ⑦ 수업일수를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민원이 많음
☐ ⑧ 기타(무엇?)

- 1-2.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로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 ① 수업일수 180일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적절함
☐ ② 법정 수업일수를 조정해도 실제 수업일수 운영에 큰 변화 없음
☐ ③ 최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음
(예: 원격수업이나 가정체험학습을 수업일수로 인정)

- ☐ ④ 현재도 특수상황에는 휴업일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음
☐ ⑤ OECD 국가나 다른 학교급과의 균형이 필요함
☐ ⑥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범위만 확대하면 됨
☐ ⑦ 어린이집과 경쟁하며 사립유치원이 200일 이상 수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무의미함
☐ ⑧ 수업일수 조정보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등원이나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⑨ 수업일수 조정보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⑩ 수업일수를 지나치게 감축할 경우 학교로서의 교육기능이 약화됨
☐ ⑪ 기타(무엇?)

2. 유치원에서 수업시간을 규정한다면 다음의 항목이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 ×로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그 이유를 1개만 체크해 주세요.

** 1차 응답 결과: 자유놀이(바깥놀이 포함)와 대소집단 활동은 100% 수업시간에 포함으로 응답, 의견이 다른 일과에 대해서만 질문함.*

[참고]

초·중등학교는 수업시간은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방학) 등은 제외하고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을 포함(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포함하지 않음)합니다.

구분	포함여부 (○, ×)	포함하는 이유	포함하지 않는 이유
등원 및 하원 지도 시간 <i>* 1차 응답 결과: 포함 63.3%</i>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③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④ 기타 ()	☐ ① 생활지도에 포함, 초등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 필요함 ☐ ② 누리과정 운영시간임 ☐ ③ 기관별 차이 있음 ☐ ④ 유아별 차이 있음 ☐ ⑤ 학부모 책임 인계 ☐ ⑥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 ⑦ 기타 ()
기본생활(손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등) <i>* 1차 응답 결과: 포함 70.0%</i>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③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① 수업시간 사이에 이루어짐(초등의 중간 쉬는 시간) ☐ ②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

구분	포함여부 (○, ×)	포함하는 이유	포함하지 않는 이유
		☐ ④ 생활 속에서 배움이 일어남 ☐ ⑤ 기타 ()	☐ ③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 ④ 기타 ()
점심시간 * 1차 응답 결과: 포함 93.3%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③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④ 정서적 돌봄이 필요함 ☐ ⑤ 기타 ()	☐ ①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 ☐ ②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 ③ 기타 ()
간식시간 * 1차 응답 결과: 포함 83.3%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③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④ 정서적 돌봄이 필요함 ☐ ⑤ 기타 ()	☐ ① 누리과정운영시간에 포함되지만 돌봄임 ☐ ②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 ③ 기타 ()
낮잠 및 휴식시간 * 1차 응답 결과: 포함 70.0%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③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④ 심신건강에 중요함 ☐ ⑤ 기타 ()	☐ ① 개별유아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② 교육보다 돌봄의 성격이 강함 ☐ ③ 기타 ()
전이시간 * 1차 응답 결과: 포함 80.0%		☐ ①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짐 ☐ ② 교사의 지원이 요구됨 ☐ ③ 교육적 상황으로 활용 가능함 ☐ ④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 시간임 ☐ ⑤ 유아교육과정의 일부임 ☐ ⑥ 기타 ()	☐ 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임 ☐ ②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업은 아님 ☐ ③ 기타 ()

4-3. 한도여부(1일 기준)

- ☐ ① 4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 ②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 ③ 7만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함
- ☐ ④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 ⑤ 9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 ⑥ 한도를 정하지 않음
- ☐ ⑦ 기타(어떻게?:)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부록 표

〈부록 표 III-1-1〉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업일수

구분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전체 유치원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2018년	전체	210.1	4,781	208.0	5,444	206.2	6,181	3,422	183.9	699	227.9	8,777	8,799
	국공립	183.4	1,258	183.5	1,768	183.9	2,338	2,584	183.8	696	220.1	4,701	4,702
	국립	192.3	3	192.3	3	193.0	3		192.7	3	205.3	3	3
	공립(단설)	183.7	380	183.7	379	184.1	379	183.5	2	183.8	301	228.9	380
	공립(병설)	183.3	875	183.4	1,386	183.9	1,956	187.1	2,582	183.7	392	219.4	4,319
	사립	219.7	3,523	219.8	3,676	219.7	3,843	838	214.0	3	236.8	4,076	4,097
2019년	사립(법인)	213.7	488	213.8	499	213.9	522	117	186.0	1	233.4	571	581
	사립(사인)	220.6	3,035	220.7	3,177	220.6	3,321	721	228.0	2	237.4	3,505	3,516
	전체	209.5	4,681	207.5	5,323	205.8	5,979	3,272	184.0	777	229.6	8,542	8,563
	국공립	183.6	1,407	183.6	1,892	183.9	2,425	2,553	183.9	774	223.4	4,753	4,753
	국립	193.3	3	193.3	3	194.0	3		194.0	3	164.0	3	3
	공립(단설)	184.4	401	184.4	400	184.8	399	184.0	3	184.5	331	231.7	402
2020년	공립(병설)	183.3	1,003	183.3	1,489	183.7	2,023	2,550	183.4	440	222.7	4,348	4,348
	사립	220.6	3,274	220.7	3,431	220.7	3,554	719	211.3	3	237.3	3,789	3,810
	사립(법인)	216.4	458	216.5	473	216.6	493	121	185.0	1	235.2	549	558
	사립(사인)	221.3	2,816	221.4	2,958	221.3	3,061	598	224.5	2	237.6	3,240	3,252

유치원알라미(<https://e-childrenschoolinfo.moe.go.kr/customMtr/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록 표 III-1-2〉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수업일수

구분	3세			4세			5세			혼합연령		특수학급		병과후과정		전체 유치원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2018년	전체	210.1	4781	208.0	5444	777	204.0	800	6181	195.5	3422	183.9	699	227.9	8777	8799
	서울	204.7	746	203.6	777		204.0			214.3	86	181.5	70	250.3	844	886
	부산	209.5	275	209.9	337		209.6			211.4	126	183.6	26	241.1	396	396
	대구	211.0	191	208.9	242		208.2			204.9	158	183.1	20	230.2	360	360
	인천	209.7	290	205.2	344		204.1			194.5	54	181.8	39	232.5	417	418
	광주	225.9	159	220.2	198		216.8			208.6	134	186.6	14	234.4	303	303
	대전	215.9	181	210.9	217		209.1			206.4	72	182.0	43	231.8	266	266
	울산	214.6	128	211.7	146		210.8			202.7	60	184.8	22	234.2	195	195
	세종	186.2	42	186.2	42		186.3			185.1	14	183.0	22	224.4	58	58
	경기	209.5	1394	206.6	1577		204.0			189.1	512	183.8	217	221.8	2215	2223
	강원	213.1	141	210.3	155		206.4			189.7	205	185.2	27	224.9	371	371
	충북	203.7	156	203.5	156		202.0			186.6	173	183.1	37	225.2	331	331
	충남	210.1	179	208.1	207		206.8			196.2	280	187.2	46	214.5	508	508
	전북	214.1	204	212.6	213		210.0			190.1	332	184.6	19	223.2	516	517
	전남	210.0	169	209.3	175		205.4			193.0	346	185.3	38	229.3	515	515
	경북	210.3	247	209.1	289		207.9			198.4	418	185.2	14	213.3	681	681
	경남	216.4	267	212.6	347		209.9			194.8	396	186.3	41	232.8	683	683
	제주	210.7	12	208.8	22		195.6			189.4	56	186.5	4	223.4	118	118

구분	3세		4세		5세		통합연령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전체 유치원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수업일수	사례수		
2019년	전체	209.5	4681	207.5	5323	205.8	5979	194.6	3272	184.0	777	229.6	8542	8563
	서울	205.0	711	204.0	742	204.4	761	214.9	73	181.5	80	249.4	799	811
	부산	210.5	274	210.9	330	210.7	359	213.7	117	183.4	27	241.2	390	391
	대구	211.1	180	207.6	232	207.6	287	206.3	149	182.3	23	234.1	344	344
	인천	209.8	269	205.0	332	204.0	355	196.8	53	181.9	40	235.1	396	397
	광주	225.0	153	219.9	193	215.8	224	204.4	121	183.3	15	235.8	289	289
	대전	216.2	173	211.3	207	210.0	226	203.9	66	183.3	46	233.0	257	257
	울산	212.6	132	211.5	159	210.5	172	202.9	52	184.9	25	236.0	197	197
	세종	185.7	44	185.8	43	186.0	45	185.0	14	182.7	25	225.0	59	59
	경기	207.8	1372	205.3	1545	202.8	1746	188.3	493	183.6	239	223.9	2174	2180
	강원	210.8	140	208.7	147	205.3	175	189.6	203	185.3	29	229.0	358	358
	충북	202.0	149	201.9	150	200.8	167	187.4	168	183.0	43	231.2	316	316
	충남	211.0	174	208.9	198	206.7	222	193.2	278	186.8	51	214.5	494	494
	전북	212.3	193	211.2	196	208.7	222	189.1	321	182.7	22	225.5	502	503
	전남	209.3	168	209.5	174	205.1	221	192.9	347	185.5	40	233.5	503	503
	경북	209.9	258	208.7	293	207.3	342	197.5	399	188.8	19	214.0	671	671
	경남	216.3	278	213.0	347	210.2	392	193.5	359	188.5	48	233.0	672	672
	제주	214.9	13	204.3	35	196.7	63	189.7	59	189.0	5	229.8	121	121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renschoolinfo.moe.go.kr/customMt/notice/detail.do>,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록 표 Ⅲ-2-1〉 국가별 교사 연간 근로시간 중 수업시간 비율

단위: 시간, %

국가명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	연간 법정 근로시간 대비 수업시간 비율	교사1인당 연간 수업시간	연간 법정 근로시간 대비 수업시간 비율
오스트리아	-	-	792	44.6
칠레	999	50.7	999	50.7
콜롬비아	768	50.0	960	62.5
체코	1,302	77.5	620	41.3
덴마크	-	-	718	43.9
에스토니아	1,332	82.7	588	38.2
프랑스	900	56.0	900	56.0
독일	1,755	99.9	698	39.8
헝가리	1,318	80.0	652	39.5
아이슬란드	1,577	87.6	603	33.5
이스라엘	1,019	96.6	835	68.2
일본	-	-	747	43.0
한국	782	54.3	676	44.4
라트비아	1,368	77.7	572	43.3
리투아니아	640	-	835	55.2
룩셈부르크	880	58.7	810	58.1
네덜란드	930	56.1	930	56.1
노르웨이	-	-	741	43.9
폴란드	1,075	62.5	554	39.4
포르투갈	845	65.3	761	58.7
슬로바키아	1,144	73.3	733	47.0
스페인	869	61.0	871	61.1
스위스	756	39.2	785	40.7
터키	898	56.8	718	45.4
벨기에(French)	766	79.7	708	73.6
스코틀랜드	855	62.6	855	62.6
OECD평균	993	63.6	778	50.2
EU평균	1,042	68.2	738	49.4
유치원 21개국 평균	993	68.0	778.3	49.6

자료: OECD(2020),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Indicators, pp. 423-424의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